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2018. 1.

국토교통부



목 차



I. 일반현황	1
II. 2017년 성과와 평가	7
III. 2018년 업무추진 여건	12
IV. 2018년 업무추진방향	14
1. 기본방향	14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15
V. 주요업무 추진계획	17
1.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18
2.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26
3.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7
4.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49
5.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59
6.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70

I.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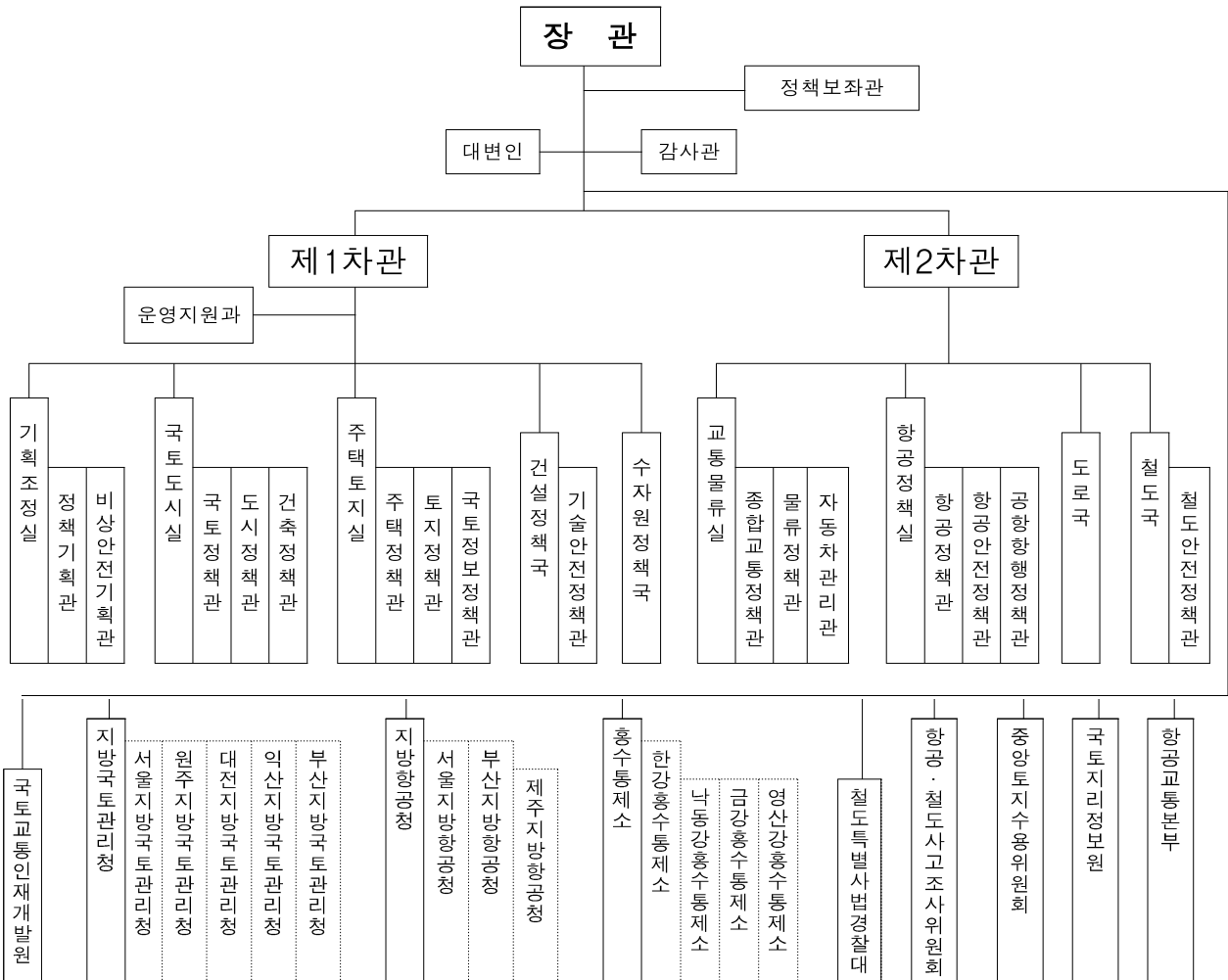
임 무

- 균형있는 국토발전 및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관리
-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

조 직

(’18.1 현재)

◆ 정원 4,071명(본부 993명/소속기관 3,078명), 2차관 5실 4국 18관
 - (소속기관) 1차 18개, 2차 42개, 3차 29개



예 산

◆ 총 17조 700억원 ('17년 본예산 대비 15.1% 감소)

(단위 : 억원, 총지출 기준)

구 분	'17예산 (A)	'18예산 (B)	증감 (B-A)	%	
합 계	201,168	170,700	△30,468	△15.1	
SOC	□ 교통 및 물류	159,784	126,840	△32,944	△20.6
	○ 도로	73,534	58,899	△14,635	△19.9
	○ 철도·도시철도	71,436	51,969	△19,467	△27.3
	○ 항공·공항	1,436	1,435	△1	△0.1
	○ 물류 등 기타	13,378	14,537	1,159	8.7
	□ 국토 및 지역개발	30,792	31,483	691	2.2
	○ 수자원	18,108	16,779	△1,329	△7.3
	○ 지역 및 도시	7,706	11,495	3,789	49.2
	○ 산업단지	4,978	3,209	△1,769	△35.5
	복지	□ 사회복지	10,592	12,377	1,785
○ 주택		1,193	1,125	△68	△5.7
○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9,399	11,252	1,853	19.7

◆ 법률 123개, 대통령령 133개, 국토교통부령 157개

소관	법 률
<p>국토 도시실 (32)</p>	<p>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건축법, 건축기본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경관법, 건축사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8. 4. 25 시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p>
<p>주택 토지실 (33)</p>	<p>주택법, 주거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주거급여법, 공동주택관리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18.2.9 시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투자회사법,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p>

소관	법 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8.6.20 시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건설 정책국 (7)	건설산업기본법, 해외건설 촉진법, 골재채취법,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8. 1. 18 시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1.1 시행)
수자원 정책국 (7)	지하수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통 물류실 (19)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안전법, 한국교통안전공단법('18. 1. 1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 정책실 (9)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항공안전기술원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도로국 (4)	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유료도로법, 사도법
철도국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궤도운송법, 철도안전법, 건널목개량촉진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조정실 (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산하 공공기관

◆ 총 23개 기관으로 공기업 9개(시장형 2, 준시장형 7), 준정부기관 5개(위탁집행형), 기타 공공기관 9개

□ 시장형 공기업 (2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
한국공항공사	성일환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

□ 준시장형 공기업 (7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주택의 건설·공급과 토지의 취득·관리·개발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관리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도로의 설치·관리 기타 이에 관련된 사업
한국철도공사	공 석	국가철도의 운영·관리
한국감정원	공 석	부동산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덕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보증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촉진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5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석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진단기술 연구·개발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석	건설교통기술 R&D 사업에 대한 관리·평가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측량기술 개발과 지적발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 기타공공기관 (9개)

기관명	대표자	임무 및 기능
주택관리공단(주)	공석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보수 및 운영시설물 유지관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이명훈	건설기술용역(감리)사업 및 엔지니어링(설계)사업
코레일네트웍스(주)	곽노상	승차권 위탁발매, 철도회원 관리
코레일로지스(주)	박기홍	철도물류운송 서비스 등
코레일관광개발(주)	방창훈	관광레저, 열차내 서비스
코레일유통(주)	유제복	역내 상업시설 및 광고매체 운영
코레일테크(주)	반극동	철도 시설, 전기, 차량 유지보수 및 관리
(주)위터웨이플러스	이진호	마리나·친수 관광레저시설의 운영, 뱃길경관 관리
항공안전기술원	정연석	민간항공기, 공항·항행시설 등 인증·연구

II. 2017년 성과와 평가

1. 주요 성과

◆ 주거·교통 서비스 강화, 일자리 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사람중심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혁신 선도사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역량을 집중

(1)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기반 마련

- 「주거복지로드맵」(17.11)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 마련 등 주거복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
 - 공급자 중심의 주택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신혼·고령·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마련('18~'22)
 - 세제·건보료 혜택을 통한 임대등록 활성화,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임차인 보호강화* 등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 * 계약갱신거절기간 단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 「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과 「10.24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 8.2 대책 후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대책 전 과열을 보였던 수도권·부산·세종 등도 진정
 - * '17.7월5주 → 12월4주 주택가격 상승률(%)
(전국) 0.10 → 0.01, (수도권) 0.19 → 0.07 (부산) 0.10 → △0.04, (세종) 0.27 → 0.00

[2] 광역교통 서비스 확충을 통한 출·퇴근 부담 완화

- 출·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큰 수도권 급행열차를 도입*('17.7)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과주~삼성) 기본계획을 확정('17.12)

* 경인선·경의선·수인선·안산선 4개 노선(노선별 6~20분 단축 효과)

- 출·퇴근 전용 M-버스 도입*,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버스운행을 확충하고, 수원역·오산역 환승센터 개통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 송도~여의도(약 35분 단축), 송도~잠실역(약 40분 단축) 2개 노선 우선 도입

[3] 핵심 교통인프라의 공공성 강화

-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17.7)하고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17.10)하는 등 간선도로망의 공공성 강화 추진

* (통행료 인하) 30년간 약 1.8조원 규모 (조기완공) '25.12월 → '24.6월(1년 6개월 단축)

-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하여 향후 지역주민·공공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17.11)

* '17년 점용기간(30년) 만료 역사 : 영등포역, 舊서울역, 동인천역

[4] 취약분야 일자리 개선

- 임금체불, 불공정 대우 등 근로여건이 낮은 수준인 건설산업*에 대해 임금 보장, 근로여건 개선 등을 담은 종합대책 마련·시행('17.12)

* 종사자 196만명 중 73%가 비정규직, 월평균 소득은 초산업 평균의 78%(267만원)

- 공공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전면 적용, 임금지급보증제 및 적정 임금제 도입,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 조종사 부족, 미스매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 보장형 훈련체계* 도입, 저소득층 훈련생 지원 등 조종사 인력양성방안 마련('17.12)

* 항공사가 훈련생을 먼저 선발 → 훈련기관에 위탁(훈련 이수 및 자격 취득) → 채용

[5]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역점사업 본격 착수

- 공공매립 주도를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마련,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비율 확대*(17.10, 現 13.3% → '22, 30%) 등 지역육성 전략 구체화
- 도시재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첫 뉴딜 시범사업 대상 68곳* 선정(17.12)
 - * 우리동네 살리기(17), 주거지 지원형(16), 일반 근린형(15), 중심 시가지형(19), 경제 기반형(1)

[6] 지역 거점간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 (도로) 서울-세종(안성-성남) 등 고속도로 5개 노선(176km) 착공 및 7개 노선(294km) 개통, 국도 44개 구간 개통(383km) 등 간선망 지속 확충
- (철도) 경강선 KTX 개통(17.12), 기존선 고속화(수색~원주)를 통해 평창올림픽 수송을 지원하고, 삼성-동탄(17.3) 등 주요노선 착공
- (공항) 제2터미널 등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완료('09.6~'17.12)하여 동북아 핵심 허브공항으로 도약 기반 마련
 - *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톤의 화물 처리 능력 확보(여객수송 세계 5위 규모)

[7]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범 시행(17.9),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국가전략 R&D 사업 선정 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기반 마련
 - 통합 플랫폼*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17.11),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시범사업 지구 선정(5곳) 등 실증사업 본격 추진
 - *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법·방재·교통·시설물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SW
- (자율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K-City'* 착공(17.8) 후 일부구간을 우선 개방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확대('16, 11대 → '17, 30대)
 - * 32만m² 규모로 자동차안전연구원(화성)에 구축 중, 고속도로·도심 등 5개 환경 재현
- (드론) 야간·비가시권 비행 특별 승인제도 도입,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17, 3개소 설계) 등을 통해 상업용 드론시장 성장세 확대*
 - * ('16→'17.11) 장치신고: 2,172 → 3,735대, 사용사업체: 1,030 → 1,459개, 자격취득: 1,326 → 3,736명

2. 평가 및 반성

◆ 지진, 타워크레인 전도 등 연이은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이 높고, 다양한 노력에도 국민생활 개선과 혁신성장의 체감 성과는 낮은 편

(1) 안전사고 재발에 따른 국민의 불안·우려 증대

- (자연재해) '16년 경주(5.8규모)·'17년 포항(5.4규모) 등 잇단 지진발생으로 필로티, 소형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강화 요구 증대
- (건설·화재) 범부처 대책 등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평택대교 붕괴('17.8), 크레인 전도, 화재사고 재발로 현장중심의 점검강화 요구
- (교통안전)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추세에도 졸음운전, 위험물 폭발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되어 보다 세밀한 대책 필요

(2)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비는 여전히 높고, 국지적 집값 불안도 지속

-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 서민주거안정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정책시차, 그간 누적된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거비 부담은 여전
 - * 지난 10년간 전세가격 54.5%(아파트 73.2%) 상승, '16년 전월세 중 월세비중 60.5%
- 전국 집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경제회복에 따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집값 상승세 지속
 - * 서울/강남 4구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 : 8.2대책 직전(7월5주) 0.33/0.48 → 8.2대책 직후(8월1주) -0.03/-0.11 → 최근(12월4주) 0.20/0.40

(3)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요구

- 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마련되고 있으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대도시권 교통정책 조정 등 구체적인 성과 부족
 - * 민자도로 관리·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17.12), 대도시권 교통난해소를 위한 조직 신설 등
-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답보상태이나,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속 증가하는 등 대도시권 혼잡이 가중되고 있어 급행서비스 확대 등 혁신 필요
 - * 대중교통분담률 ('10) 42.6% → ('15) 43% / 자동차 수 ('06) 1,590 만대 → ('16) 2,180 만대

[4] 사회적 갈등의 표출 지속

- 시설확충,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을 건설 추진중이나 주민이전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
 - * 부산 강서구, 김해 지역 김해신공항 반대위 구성,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 출범 등
- 취수원 이전 등 수자원의 확보와 배분에 대해 중앙정부,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 지속
 - * (경남-부산)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해 이견 /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이견
- 남해 EEZ 골재 채취 중단('17.1~) 이후,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어민단체 등과 협의중이나 이전 해소에 어려움

[5] 불공정한 관행 혁신에 대한 요구 집중

- (건설) 불법 재하도급 등 수직적 갑질문화, 칸막이식 업무영역,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필요
- (물류) 운임덤핑, 과적 등 화물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택배 근로자의 고강도 노동·저임금*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
 - * 배송기사 日취급량은 150~250개, 月순수입 240만원(일본과 비교시 약 69% 수준)

[6] 혁신성장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가시적인 성과 미흡

-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서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
 - 新산업을 활용한 혁신성장 추진전략이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메커니즘도 미흡
- 해외건설 지원펀드 신규조성(GIVE, 약 850억원) 등 지원체계 확충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PPP사업 증가 등으로 해외수주 실적 회복에 어려움*
 - * 해외건설 수주액(억불) : ('13) 652 → ('14) 660 → ('15) 461 → ('16) 282 → ('17) 290

Ⅲ. 2018년 업무추진 여건

-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 양질의 일자리 요구 증대
- ◇ 균형발전 논의 본격화로 질적·참여형 국토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 가속화
- ◇ 안전·주거 등 '생활 핵심 인프라'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필요

1. 경제 여건

- (경제전반)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함에 따라 무역 호조, 소비심리 회복으로 '17년과 유사한 완만한 성장세 지속 전망
 - * 경제성장률 전망(% / IMF, '17.10) : 세계 3.6('17) → 3.7('18), 미국 2.2('17) → 2.3('18)
 -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 (OECD/IMF, '17.11) 3.0% / (한국은행, '17.12) 2.9%
-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구조적 전환을 위해 스마트시티·드론 등 新산업 외에 건설·운수 등 기존산업의 체질개선·혁신 요구도 증가
- (일자리) 대표분야인 건설 일자리는 시장포화,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둔화가 예상되고, 낮은 처우로 운수업과 함께 청년층 기피 지속
 - 자율차, 드론 등 新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나, 발전 초기 단계로 가시적 성과로의 연계가 절실
 - * (신산업별 연평균 성장률 전망, '18~'22) 자율차 26.1%, 드론 30.8%, 스마트 시티 19.7%

2. 국토 여건

- 인구감소·저성장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그간 양적 성장에서 질적·효율적 성장을 추구하는 압축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중
 - * 인구변화 등을 고려하여 확장적인 신규개발은 지양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기존의 생활·경제거점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국토이용 유도
- 균형발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등에서 지역의사를 적극 반영한 상향식·참여형 의사결정 요구 증가 전망
 - 도시재생 사업, 지역 선도거점 육성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요구도 확대

3. 생활 여건

□ (안전) 경주·포항 지진, 의정부·제천 화재 등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SOC, 건축물의 안전상태에 대한 국민 알권리 요구 확대

○ 안전 부주의로 인한 버스·화물차 대형사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증가 등으로 적극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점증

*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사상자 18명('17.7.9), 창원 터널 화재사고 사상자 10명('17.11.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 : ('14) 20,275 → ('15) 23,063 → ('16) 24,429

□ (주거)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등으로 안정적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 지속 확대, 시민사회 성숙으로 주택시장의 공공성·투명성 개선 요구도 점증

* 출생아수 : '95년 71.5만명 → '16년 40.6만명

** 최근 5년 청년실업률(%) : ('12) 7.5, ('13) 8.0, ('14) 9.0, ('15) 9.2, ('16) 9.8

○ 소비심리 회복, 경기 호조세 등에 따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장 과열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일부 지방은 위축 리스크* 존재

* 울산, 충청권, 경상권 등 입주물량이 과도한 지역은 시장위축, 집값 하락리스크 우려
- 미분양('17.11월) : (전국) 5.7만호, (서울) 68호, (충청권) 1.6만호, (경상권) 2.0만호

□ (교통) 경강선 KTX 개통('17.12), 인천공항 T2 개장('18.1) 등 장거리 교통망은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국민의 80%가 거주하는 대도시권 교통난은 여전

* 수도권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최하위 수준(OECD 평균 28분)

○ 여가·관광수요가 확대(연 5.3% ↑)되는 등 통행 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며, 지역 거점에 대한 연계교통망 수요 증가 전망

○ 교통수단과 지능형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카셰어링, 교통 O2O 등 공유형 교통서비스 활성화 및 차세대 사업 모델 확대 추세

IV. 2018년 업무추진 방향

1. 기본방향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안전·주거·교통 등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가시적으로 제고

- **[일자리]** 기존 일자리는 개선하고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적극 창출
 -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일자리 질 개선·산업구조 선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화물시장 등 운수산업의 불공정구조 개선도 완수
 - 新산업 등 전문분야에 인력양성에서 취업·창업으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 지역 일자리도 지속 확충
-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혁신
 -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선도사업이 국민생활에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시범사업, 규제혁신 등 가시적 프로젝트를 중점 실행
 - 스마트건설·인프라, 전문산업 육성 등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
- **[안 전]** 재난·재해 대응력을 제고하고, 사고예방 체계 강화
 - 지진·화재에 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SOC·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강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교통·시설안전 예방체계 구축
- **[국민생활]** 3만불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거·교통서비스 제공
 - 맞춤형 주거복지·주택시장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복지를 강화하고,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소비자 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 추진
 -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도로·철도·항공 등 수단별 인프라 확충 및 이용 편의개선 지속
- **[균형발전]** 자립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도입
 - 새만금, 혁신도시 등 지역거점 육성,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을 통해 저성장시대의 효율적 국토관리 추진

2.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

①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건설) 공공공사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걱정이 사라집니다.
체불된 건설임금(약 3개월분, 1천만원)을 보증기관을 통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 (물류) 택배 차량 주정차 여건 개선으로 택배기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항공) '先선발-後교육' 시스템 도입으로, 취업불안이 줄어들고 항공사 비용부담, 대출 보증 지원 등으로 교육비 부담도 낮아집니다.
-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구매 없이도 창업준비가 가능해집니다.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 (스마트시티) 新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 선도모델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 (자율차) 가상 실험도시 K-City를 개방하여 스타트업·연구소가 활용하고, 평창 자율차 시연과 서울 도심 시승행사를 개최하여 성과 공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 (드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드론 조종사를 육성하는 인력양성 인프라가 강화됩니다.
- (제로에너지) 세종·오산·김포에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가 준공됩니다.

③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 야	'17	'18	'22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4,191명(잠정)	3,800명 이하	2,000명 이하
(철도) 운행거리 1억km당 사고건수 ('22년까지 철도사고 50% 감축)	7.3건 ('13~'17 평)	5.8건	3.7건
(항공) 100만 비행횟수 당 사고건수 ('22년까지 '16년 대비(3.0건) 50% 감축)	2.3건 ('13~'17 평)	⇒ 1.76건	⇒ 1.54건
(건설) 현장 사고성 사망만인율 ('22년까지 사망만인율 60% 감축)	1.76‰('16)	1.50‰	0.70‰
(지진) SOC 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96%	99.4%	100%('19)

- 교통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위험시설이 개선되어 보행 여건이 개선됩니다.
- 건설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이 강화되어 사고 예방적 문화가 정착됩니다.

④ 서민주거 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분 야		'17	'18~'22
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 주택	12.7만호(준공)	연평균 13만호 (총 65만호)
	공공지원 주택	1.1만호	
서민주거비 지원	주거급여	82만가구	연평균 136만 가구
	금융지원(만/가구)	18만가구	

- '18년 한해 등록 임대주택 재고를 총 120만호 확보(전년 대비 20만호 ↑)하고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계약갱신기간 거절기간 단축 도입 등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⑤ 더 많은 분들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분 야	'17	'18	'22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 개선 ('22년까지 상습 정체구간 50% 이하로 개선)	176km	117km	55km(잠정)
고속철도 일일 수송량 ('22년까지 고속철도 일일 수송량 25% 증가)	21.8만명	22.0만명	27.6만명
일평균 대중교통 이용인원	1,059만명('16)	1,103만명	1,241만명
저상버스 보급률	24.6%	26.9%	42.2%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	110.3%	115.8%	130%

-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을 완화(30 → 50km)하고,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울산·세종·전주시)하여 교통비 부담이 낮아집니다.

⑥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분 야	'17	'18	'22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국가지정, 누계)	5개소	6개소	12개소
노후산단 재생(누계)	23개소	25개소	30개소
도시재생 뉴딜(선정)	68개소	매년 100개소 내외	

- 맞춤형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지역활력이 되살아나고 청년 스타트업·지역조합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며, 혁신도시·행복도시 등이 지역 거점으로 성장합니다.

V.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책비전 】

**함께 성장하는 희망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개선

6대 정책목표

정책목표 1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책목표 2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ی겠습니다.

정책목표 3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책목표 4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5

더 편리하고 저렴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겠습니다.

정책목표 6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① 건설산업 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우리나라 대표 일자리인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임금체불·불공정 관행을 혁신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토양 마련
 - * 건설산업 종사자는 총 196만명으로 단일업종으로 최다(전체산업의 7.4%, '17)

가. 일자리 질 개선 및 공정성 제고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
 - *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지 못하며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18.1월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전면 적용하고, 연내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5천만원 미만 소액공사, 30일 이내 단기 공사 제외)
 - * 건설산업기본법, 전자조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화('18.6)
- 임금체불 사후구제를 위해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3개월분 체불 임금(약 1천만원)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 건산법 적용이 제외되는 5천만원 미만 종합공사 등 일부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적용(착공전까지 보증가입 후 발주자에게 제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 적정임금 보장 및 근로여건 개선

- 다단계 생산체계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공공발주자가 고시된 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개선
 - '18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 실시(LH, 도공, 수공, 철도공단 현장 등 10개소 내외, '18.3)를 거쳐 '20년부터 본격 시행
-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대상공사 확대* 등을 통해 건설근로자 노후 생계 지원
 - * 日 납부액: 4,200→ 5,000원, 대상공사: 1억원 이상 공공공사 +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 건설기계업·설계업 등 상대적 약자 보호 강화

-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해 대여대금 보증에 미가입한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대금 지연이자제 도입 추진

* 과징금 : 2천만원 → 4천만원 / 영업정지 : 1개월 → 2개월

-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원하도급 업체별 공사현장 단위로 묶어서 일괄 보증하는 방식(근보증)으로 개편

- 민자사업자 선정 평가시 적정 설계대가 지급여부를 심사항목에 포함(설계사-시공사 간 계약서 첨부 의무화)하여 시공사 불공정 행위를 방지

- 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18.12)하여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적정대가 확보를 통해 청년인재 취업 촉진

*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건설공사는 기시행중('16년)

나. 건설산업 선진화

□ 생산체계의 선진화

-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칸막이식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18.10)

* 원도급은 종합공사업체만, 하도급은 전문공사업체만 가능하도록 한 경직적 업역 규정

- 기술자 중심의 건설업 등록기준도 단순 노무 비중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기능인력 보유요건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18.10)

- 시공기술력 제고와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원도급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부여*('18.10)

* (예) 직접시공의무제 대상(현행: 50억원 미만)을 확대하고, 직접시공 실적을 시평에 가산

- 재하도급 적발업체에 대해 2진 아웃제(예: 7년내 2회 이상) 도입('18.6)

□ 변별력 강화 및 적정 원가 산정 위한 발주제도 개선

- 발주제도의 변별력 제고를 위해 공공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별한 후, 정밀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하는 방안 등 검토('18.10)
 - * (예) 역량있는 발주기관(국토청·LH·도공 등)에 대해 정밀평가 권한 부여 검토
- 적정임금제 도입 등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적정 공사원가 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마련('18.10)
 - *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TF를 구성하여 표준시장단가 개선,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 공공기관 부당특약 시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도출

□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

- 하도급적정성 심사 기준 강화*, 하도급 계약 전 정보공개제도를 도입('18.10)하고, 저가 하도급 상습업체에 보증료 할증 추진('18.6)
 - * (예) 예정 가격 대비 60%미만 하도급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현행 기준을 상향 검토
- 원-하도급간 상호협력 평가시 평가방식 개선, 입찰가점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물변제 금지 등 하도급대금 보호 강화('18.10)
- 불공정 관행 일제조사('18.3~'18.7)를 실시하고, 일감 몰아주기, 일감 가로채기, 입찰담합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18.10, 건산법 개정)

□ 부실·불법업체 퇴출 및 우량업체 지원

- 부실기업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건설기업 처분이력 대국민 공개**, 대금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강화 등을 통해 시장 퇴출 유도
 - * 고용보험(기술자), 건축 인허가(실적) 등 유관 정보망과 연계하여 등록기준 점검 강화 등 추진
 - ** (예) A: 위반사항 없음, B: 과징금 1회, C: 영업정지 1회, D: 과징금 2회 등
- 일자리 창출실적이 우수한 시공·설계분야 중소기업에 '혁신성장 컨설팅 바우처'를 제공하여 지원('18.12)

② 운수산업 공정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 운수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로 안전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불공정 경쟁체제, 열악한 근로환경 등 개선 추진

* 육상운송업 과로사 만인률은 0.77(‰)으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17.10, 고용부)

가. 공정한 일자리 기반 구축

□ 물류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 (업종 개편) 현재 용달업·개별업·일반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화물 운수 업종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20대 이상)**로 개편

* 하위법령에서 소형(1.5톤 이하), 중형(16톤 이하), 대형(16톤 초과)으로 세분

- 이를 통해, 택배 증가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일반 운송 업체 규모화(허가기준 1대 → 20대 이상)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유도

○ (지입제 개선)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 지입 차주의 계약 갱신 청구권 강화* 등 **위·수탁차주 보호방안**을 시행

* (현행) 6년까지 보장 → (개선) 6년 이후에도 보장하되, 6회 이상 위·수탁료 미납 시 해지 허용

- 장기적으로 신규허가 차량은 **직영(양도금지 포함)**을 전제로 허가

※ 업종개편, 지입제 개선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국회 계류중) 개정후, 6개월뒤 시행

○ (운임 합리화) 안전한 화물차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차안전 운임**을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

* (예) 일정기간(예 : 2년) 동안 시행시기를 유예하고, 컨테이너, 시멘트 등 특정 화물에 대해 우선 도입 → 성과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방법 등 결정

- '화물차안전운임'과 별개로 운송 서비스 수준·인건비·유류비 등 평균적인 '**화물차안전운송원가**'를 공표

* 성격: 화물차안전운임(강제성 있는 최저운임), 화물차안전운송원가(참고운임)

- (공정질서 확립) 물류시장 내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18.上,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 신고센터 설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근거 마련, 조정 권고 등

- 화주-물류업계 및 물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업계 공동으로 '물류산업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18.下)

□ 철도산업 공공성 강화

- (주)SR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경영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지정 추진('18.2)

* 정부가 경영지침을 통보하고 평가 실시,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대상으로 편입

- 코레일과 (주)SR통합 등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된 철도산업 구조 개혁에 대한 성과평가를 거쳐 지속가능한 철도시스템 마련

* 평가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안) 도출

□ 공정하고 경쟁적인 항공시장 조성

- 건전 경쟁 유도를 위해 국적항공사 독점운항 노선 재평가제 도입, 인기노선 운수권 회수기준 강화* 등 기준도 개선('18.9)

* (현재) 운수권 확보시 계속 운항(1년간 20주 미운항시 회수) → (개선) 유효기간, 회수기준 차등

- 수용능력이 포화된 공항의 슬롯(운항시각) 활용도를 제고하고, 항공사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슬롯 운영제도 개선*('18.10)

* 혼잡공항 슬롯 조정기준 마련, 인천공항 T2 개장에 따른 신규 슬롯의 전략적 배분, 모회사-자회사간 불공정 슬롯 교환 금지, 미취항 지역 신규취항시 슬롯 우선 배분 등 검토

-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규 항공사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기존항공사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재무부실 항공사 퇴출기준 강화**

* 자본금 요건을 상향해 건실 업체의 진입 유도, 사업면허 이후 운항증명(AOC)도 강화

** 재무개선명령 요건 : 3년 → 1년 이상 자본잠식된 경우('18.1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나. 운수업 등 종사자 처우 개선

□ 택시·택배 등 영세사업자 보호 강화

- (택시) 법인택시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운영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투명화
 - * (기존) 유류비, 세차비, 사고처리비, 차량구입비 + (추가) 내부장비의 설치·운영비('18.11)
 - ** 운송수입금, 승하차 정보 등 택시운행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18.12)
- (택배) 택배일자리 환경개선 T/F 운영('18.1~)하여 현장중심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배송환경 개선을 위한 R&D* 추진('18년~)
 - * 택배차 적재함 최적화 기술, 상·하차 자동화 기술 개발 등('18~'22년, 130억원)
- 배송을 위해 주정차가 불가피한 지역에 택배차량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18년~)하여 주차부담 및 안전문제 완화
- (대리운전) 관계부처(공정위·금감원·경찰청 등) 협업을 통해 부당 수수료, 영업제한 등 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 지속 추진

□ 버스 운송종사자 보호 및 지원

-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운수업 일부(노선버스)를 제외하여 휴식시간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 * 현재 제20대 국회 내 ① 운수업 특례업종 제외(3건), ② 특례업종 폐지(2건), ③ 업종조정·근로시간 상한설정(2건)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총 8건 상정 중
- 군대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 교육 시행, 자격취득비 지원 등을 통해 여객차량 운송 자격취득 지원('18.4~)
 - * 대형1종면허 +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고 운전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軍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문제 해결 및 일자리 창출 기대
-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인력 유출·유입을 모니터링 하고, 인력 부족 사업장에 군인력 취업정보 제공

③ 체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 新산업 기술혁신의 효과가 전문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제고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창업·성장 플랫폼 강화

가. 전문분야 인력양성 강화

□ 건설산업

-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18만명**(전체 기술자의 22.7%)의 특급 기술자에 대해 **등급 세분화**(특1, 특2) 등 역량강화 방안 마련('18.10)
 - * 예) 엄선된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2~3개월) 교육 후 면접을 거쳐 특1급 인정 추진(기술사 이외의 기존 특급기술자는 모두 특2급으로 편입)
- 건설기능인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도입('18.下)하고, 기능인력 권역별 훈련기관 지정(수도권 우선, '18.下), 양성규모 확대 추진
 - * 국토부 산하 300억원 이상 공사 우선 적용, 효과분석 후 적용범위 확대 추진

□ 항공산업

- 高비용 조종 실업자 최소화, 맞춤형 조종사 수급을 위해 “**先선발-後교육**”을 연내 **全國적항공사**에 도입하고 수급관리 강화*
 - * 조종사·정비사 인력산정 기준을 권고하고 연도별 수급전망 공표('18.11)
- **저소득층 국고보조 조종사 장학생**을 확대(2→30명)하고, 대출보증 등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항공장학재단** 설립 추진

□ 물류산업

- 정부, 벤처캐피털, 지원기관 공동으로 **펀드투자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18.1)하여 유망 스타트업 기업 발굴·지원
 - * 신선물류, 바이오물류 등 신기술 활용, 유통·IT 등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 최신 물류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문인력 양성과정**에 **이공계 전공자 참여 확대·ICT 과정 편성** 등 사업을 개편하고 **일자리 매칭***도 강화
 - *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9월)와 연계하여 구직자-물류기업간 매칭 지원

□ 공간정보 산업

- S/W, H/W(약 1.3억 원) 구매 없이도 창업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추진('18, 시범운영)
 - 창업지원 채널을 통합·조정하여 효율화하고, 우수업체 창업자금 지원금 점진 확대(現 年4억원 → '20, 8억원) 및 협업공간 무상 제공*
- * 공간드림센터 : 1단계 서울센터('17.12), 2단계 세종센터('19), 3단계 전주센터('20)
- 창의형 교육과정 개편 등 공간정보 전문인력 670여명 양성(~'18.12)
 - * (기능인력) 특성화고→특성화전문대 / (창의인재) 대학원 교육과정 개편으로 창의·협업능력 함양

나. 공공 일자리 인프라 강화

□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지속 이행

- 국토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4.2만명중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2.9만명을 대상(전환율 71.7%)으로 '20년까지 정규직 전환 추진
 -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파견·용역 인원(1만명) 등에 대해 1단계(공공기관) 전환을 추진하고, 2단계(자회사), 3단계(민간위탁기관) 전환도 본격 착수
- 「국토교통 공공기관 일자리 TF」, 워크숍('18.6) 개최 등 소통을 강화하고,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비정규직 전환실적을 반영('18.1분기, 기준개선)

□ 일자리 지원기반 정립 및 공공역할 강화

- (단계별 계획수립)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국토부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18.3)
- (통계개선) 정확한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 증감, 질 개선 측면에서 일자리 통계(업체·일자리수, 산업 세분화 등) 및 지표개발('18.5)
- (공공역할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기능에 따른 인력 수요 등을 적기 파악하여 일자리 확충에 기여

2

국토교통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ی겠습니다.

1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점 육성 및 성과 가시화

가. 도시 혁신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 스마트시티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미래 신도시 조성에서 노후도심 재생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

□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 시범도시’ 조성

○ 백지상태 부지를 활용, 4차 산업의 新기술을 총집약하여 스마트 도시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선도모델을 ‘21년까지 조성*

* 「스마트시티 특위」를 통해 기본구상을 마련(’18.1월)하고, 세부계획 수립(’18.12)

○ 첨단 기술, 과감한 규제개선, 리빙랩 구축 등으로 민간이 혁신 사업모델을 시험·적용하여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으로 조성

□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확산모델 추진

○ (데이터 허브모델) 도시데이터를 상호 연계한 데이터 허브를 구축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솔루션 개발 및 실증(R&D, 2곳)

○ (테마형 특화단지) 지역 특성에 맞는 솔루션 발굴을 위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여, 혁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를 스마트화(4곳)

○ (스마트 도시재생) 노후도심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구 조성(4곳)

□ 추진기반 정비 및 확산

○ 스마트시티 조성, 산업육성, 일자리 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 (’19~’23)을 수립(’18.12)하고 입지관련 규제 등도 발굴·정비

○ 스마트도시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 지자체를 평가·선정하고,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보급 대폭 확대(6 → 12곳)

나.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상용화와 확산을 위해 테스트베드 K-City를 완공·개방하고, 국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 기술개발 기반 구축

○ 기술개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가상실험도시 'K-City'*를 완공·개방('18.12)하고, 서울 도심에도 실도로 테스트베드 착공('18.8)

* 11만평 규모로 고속도로·도심·교외 등 5종류 실제환경 재현, 5G 통신시설도 구축

○ 혁신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확정·발표('18.3)하고, 다양한 기업간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육성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

* 100여개社 참여 협의회 구성, 기술협력·지원, 테스트환경 제공, 대기업 공동시험 진행 등

- 대규모 자율주행데이터 축적·활용을 위해 공유센터를 구축('18.12)하고, 공동프로젝트·컨소시엄 등 異種업계간 연계 유도

□ 상용화를 위한 국민체감 확대 및 제도마련

○ 평창올림픽 자율차 시연('18.2)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 대규모 체감 행사('18.6),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 이와 함께 자율주행 대중교통시스템, 트럭 군집주행 등 실증 R&D도 착수

○ 자율차 안전의 핵심요소인 주행·고장 분야 안전기준안('18.12) 및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보험제도안('18.6)을 마련

□ 스마트인프라 구축 확대

○ 자율주행 전국 확산을 위해 수도권 고속도로(85km), 서울 버스차로·도시고속도로, 제주 주요관광도로 등 주요 도로를 스마트화*('18~'20)

* 우선 일반차(화물차·버스·렌터카)에 안전정보 등을 제공하고, 향후 자율차와 연계

○ 스마트도로와 연계하여 서울·제주 등에 대해 정밀도로지도 345km를 추가로 구축*하고 수도권·충청권에 정밀GPS 시범적용 추진

* '17년까지 경부·영동고속도로 등 1,351km를 구축 → 250여개 업체·대학 등에 무상제공

다. 드론산업 육성

◇ 세계 최초 K-드론 시스템 개발, 공공시장 투자를 통해 국내 드론시장 규모를 '18년 2배, '22년 10배 이상 확대('17년 1.2 → '18년 2.3 → '22년 14.4천억원)

□ 공공선도형 시장창출 및 규제혁신으로 산업 불입 유도

- 공공분야의 드론 수요와 민간 드론업체간 매칭을 강화하여 공공 부문 드론 국산 도입율을 40%까지 확대('17년 24%)
 - 드론 사업분야 발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신규수요 창출 촉진
 - * 5년간('17~'21) 3,700여대 : 국토·교통(850), 경찰·소방·산업·산림·해양 등(2,230), 지자체(660)
- 드론의 위험도 및 성능을 감안한 新분류기준을 정립하고, 네거티브 원칙의 차등규제* 도입 등 규제 전면 개편('18.9, 방안마련)
 - * (예) 완구류급 드론은 필수안전사항(고도·관제권 등) 이외 규제는 미적용
- 다양한 드론 상용화 사례를 창출·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비행 특별승인제 적용 등) 및 재정지원 추진*
 - * 수송수요 공모(예: 긴급의약품 수송 등)를 통해 수요처·개발업체의 드론 운영 지원(5개 내외)
- 드론 Life-Cycle 관리 및 편의제고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드론 등록·승인 민원서비스 구축('18.12, 시범 도입)

□ 드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마음껏 개발·실험할 수 있는 드론 비행시험장(신규 2, 기존 3), 국가 종합시험장 구축('18.9, 고흥 통제센터 착공, 130억원)
-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통합 관제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 실증사이트 구축 및 초기 운영시험 착수('18.12)
-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인항공기 운항기술(~'21), 드론 교통 관리체계(~'21),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22) 등 선도기술 개발
- 조종자격 수요 증가에 맞춰 교육기관 내실화 방안을 마련('18.6) 하고 전용 실기시험장 구축('18, 3억원)도 추진

라. 스마트 건설기술

◇ 3차원 설계, 건설 자동화 등을 통해 건설 효율화 및 안전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으로 전환

□ 스마트 건설자동화로 생산체계 혁신

○ 국내 건설산업이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고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 기술혁신 추진

- 공공 건설분야에 3차원 설계기법(BIM*)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BIM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필수적용 기술로 반영('18.6)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정보(기획-설계-시공-유지)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 유지관리 가능

○ 미래형 R&D를 적극 추진하여 현장 의존, 노동집약형 건설생산체계를 첨단 공장형으로 변모시켜 산업 생산성을 업그레이드

- VR 활용 가상시공, 3D 프린터를 활용한 건설부재를 공장 제작, AI를 탑재한 건설로봇이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자동화 기술개발

* (목표) 공기 50% 단축, 사고율 45% 감소, 생산성 40% 향상

** 건설자동화, IoT 기반 유지관리 등 R&D의 기술성평가 및 예타 통과 추진('18.3~12)

□ 건설 엔지니어링업체의 기술 경쟁력 강화

○ 건설관련 산업표준(KS)을 설계기준·시방서와 연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국내 건설기준의 해외 이전* 추진('18.11)

* 몽골, 캄보디아 등에서 국내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화, 기술협력회의 개최

○ 엔지니어링 종합심사제를 도입하여 실적 건수 위주에서 벗어나 실제 기술력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선진국형 평가방식으로 전환

* 공공기관 시범사업(19개)을 바탕으로 국가계약법(기재부) 및 건진법 개정('18.12)

마. 제로에너지 건축 본격 확산

◇ 공공부문 선도 및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시장 '18년 3배, '22년 100배 이상 확대('17년 10 → '18년 30 → '22년 1,000개소)

□ 공공선도를 통한 시장 확대

- 준시장형 공기업까지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을 확대('17, 시장형 공기업) 하여 국가 공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을 3배로 확대('17년 10 → '18년 30개소)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세종·오산·김포 298세대)를 준공('18.12)하고, 동탄 등에 추가 조성사업 착수('18.6)
 - 분양가·임대료 인상 우려로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이 더딘 LH 등 공공부문의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18.6)
- 제로에너지건축 기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18.6)하고, 스마트 제로에너지 지구단위계획(행복도시 5-1생활권)을 수립('18.12)
 - *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거점 건축물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 '20년 공공, '25년 민간 부문에 단계적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추진('18.1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 민간시장 조기 활성화 기반 마련

- 창의적·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축 구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8.10)
- 고성능·적정비용 제로에너지 건축자재(~'21), 에너지케어 서비스 플랫폼*('18~) 등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 * 건축물 에너지 빅데이터 기반 에너지관리 서비스 등 에너지 효율화 관련 창업 지원
- 제로에너지건축의 기본이 되는 선진형 패시브건축*을 시행('18.9) 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18.1, 최대 15%)
 - *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②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 제고

가. 부동산서비스 산업

□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17.12)에 따라 체계적인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18~'22)을 수립·시행('18.12)
 -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단계적 확대 공개('18.6)
- 부동산이 중소기업 지원 대상(창업지원법 등)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개최('18.6) 등 지원 강화

□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 상장 심사기간 단축(5~6개월 → 2~3개월) 및 공모 면제요건을 축소 하고, 리츠 신용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18.12)
- 기존 사모리츠 합병 등을 통한 공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 및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8.10)

□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 허위 매물정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18.12)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피해 예방을 위해 규율방안* 마련('18.12)
 - * 분양형 호텔 등의 개별분양 적정성 및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등
- 위변조, 이중계약 방지 등 거래 안전 확보를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공공부문(LH·캠코 등)부터 선도적으로 확산('18.12)
- 시장수요에 맞춰 감정평가사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정 경쟁을 강화('18.12)
- 토지수용 대상사업(110개 vs 일본 30여개), 사업 인정에 대해 공익성 검토를 강화하고, 국제 비교연구 등을 통해 보상제도 합리화*('18.12)
 - * 「외국인 토지 수용 증가 등에 따른 토지수용제도 정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방안 마련

나. 공간정보 산업

□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확산

- 공간정보 기반의 국토 가상화*(Digital Twin)를 통해 현실을 분석·예측·제어하는 스마트시티 기반기술 개발('18.6, 예타 신청)
 - * 현실-가상세계가 결합하여, 현실의 모든 상황을 가상에서 분석·활용·제어 가능한 시스템
- 첨단 공간정보 생산을 위해 정밀지상관측(해상도 50cm급) 영상 취득이 가능한 위성 발사('19~'20, 과기부 공동) 준비 및 위성정보센터 설립 추진
 - * 시계열적 국토변화, 재난·재해 대응, 접근불능지역 정보 취득 등에 활용
 - ** 위성 1호기 탑재체 개발 완료('18.12), 위성정보 활용센터 준공('19) 등
- 게임, 가상훈련, 관광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감형 콘텐츠 등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개발(R&D, '18~'22)

다. 물산업

□ 4차 산업혁명 기반 첨단 물관리 실현

- ICT를 접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SWC(Smart Water City) 시범사업 추진(세종시, '18.4~'20)
- 하천 측량(기본계획) 및 조사(하상변동)에 드론 측량을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 친수공간관리 방안 마련('18.12)

□ 미래 먹거리 위한 물산업 육성

- 한-UAE 공동연구 통해 해수담수화 에너지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사우디 테스트베드 구축 및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18~'21)
- 구미 산단에 첨단산업(반도체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공급시설 도입 추진('18년 예타신청)
- 물 산업 혁신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인공지능 수도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신기술 개발·도입 추진
 - * 댐, 수도 등 물 관리 시설(111개) 개방('18.1~, 수자원공사)

라. 교통·물류산업

□ 첨단기술과 접목한 신교통 서비스 제공

- 스타트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병행하여 건전한 교통 O2O 생태계 조성

* (창업) 주요 기업·전문가·투자자 멘토링 → (성장) 적법성 인증제도 구축 및 시범 사업 확대 → (성숙) 기존업체-플랫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모델 선정·홍보

- 자율주행차·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요소와 카셰어링을 접목, 공유경제 활성화 및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및 R&D 확대

- 원활한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시범단지 사업지정* 추진('18.12, 서울 양천 1개소)

* 시범사업 선정 이후, 투자의향서 제출·검토 등을 거쳐 시범단지로 최종 지정 ('16년 서울 서초·양천·금천, 대구, 광주, 청주 6개소가 시범사업으로 선정)

- 물류신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첨단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도입 추진('18.12,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 첨단물류기술을 도입한 물류창고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하고 인센티브 부여

마. 항공산업

□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하늘길 확대

- 동북아내 국경에 관계없이 항공로·공역 등을 하나의 하늘길로 효율적 관리하는 통합 항공교통관리(single sky) 기반 조성('18.12)

* 아태항공장관회의(베이징, '18.1), 중국·유럽행(中) 및 동남아행(日) 항로 복선화('18.12)

- 국적 항공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및 동북아 항공시장 선점을 위해 ASEAN·중국 등과 항공자유화(open sky) 추진('18~)

* 중국과는 운수권 확대 및 성(省) 단위 단계적 자유화 추진('18.6, 항공회담 개최)

* ASEAN과는 인도네시아 등 비자유화 회원국과의 운수권 자유화를 중점 추진('18.上)

□ 인천공항을 세계 6위 허브공항으로 육성(現 7위)

- (인프라 확충) T2 운영('18.1.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年1억명을 처리할 수 있는 인천공항 4단계 사업 실시설계 본격 추진('23년 완료)
* 터미널 분리에 따른 승객혼란 방지 및 긴급수송대책 수립(안내인력 배치, 셔틀운행 등)
- (배후단지) 3단계 물류단지(32만㎡)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18.12) 하고, 신선화물 전용 터미널 및 글로벌특송사(FedEx) 터미널 개발 착수
- (신규수요 창출) 新 환승시장(인도·러시아·중국) 개척, 핵심 환승축(동남아·미주) 운항 증대를 추진하고 스톱오버상품 개발, 마케팅 등 추진

□ 공항 중심의 경제권 육성

-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
 - 지자체 의견수렴, 효과분석 등을 거쳐 '공항경제권 구상계획*'을 수립('18.8)하고, 시범 선도공항 선정(3~4곳, '18.11) 및 지원체계 구축
- * (예) 인천(항공물류, 국제 비즈니스), 김해(주요 첨단산단 연계 등), 청주(바이오, 뷰티 등)

□ 고부가가치 항공정비(MRO) 산업 육성

- 핵심사업자 선정('17.12, KAI) 후속조치로 전문 MRO JV를 설립('18.8)하고, 조기 사업착수를 본격 지원('18.12, 격납고 신축지원 등)
- 핵심 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R&D를 추진하고, 군수품 수입시 기술을 이전하는 절충교역을 통해 해외기술 이전 촉진

□ 항공레저·관광 활성화

- 항공 이착륙장 3개소(부여 등)를 신규 조성('18.9~)하고, 이착륙장·체험장 등이 복합된 '항공레저센터(새만금)' 시범사업 추진('18.3)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항공기(3개사), 레저용 항공기·비행장치(83개사)를 활용한 경관·체험관광 활성화 추진('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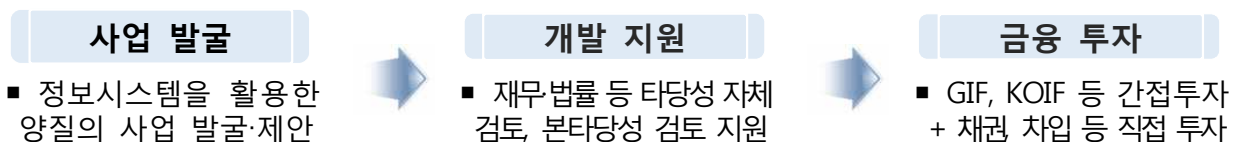
3 전략적인 해외진출 지원

- ◇ 해외진출 지원공사를 설립하여 투자개발사업(PPP)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점국가 대상 선단형 진출을 통해 해외수주 제2의 도약 추진
 - * 수주액 : '15, '16년 전년대비 급감(30%이상↓)하였으나, '17년 290억불(3%↑)로 다소 회복세

□ 투자개발사업 지원역량 강화

- 투자개발사업(PPP) 수단계를 지원할 지원공사(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18.6)하여 민관합동 해외 진출 확대
 - PPP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의 역량*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과 사업구체화, 지분(Equity) 투자 등을 통한 디벨로퍼로서 역할 수행
 - * 발굴(정부, 민간)-기획·설계(ENG)-금융조달(ECA, 민간은행)-시공(건설사)-운영(공기업) 등
- PPP 금융지원 확대* 및 해외건설지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8, 설계)
 - * 신북방·신남방 인프라개발 지원 펀드 등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추가 조성

<투자개발사업 전단계에 대한 종합 지원>



□ 전략적 글로벌 인프라 외교

- 권역별 중점 협력국가를 선정하여 기초 인프라 계획을 수립('18.6)·제공하고 관련 후속사업을 발굴, 선단형 진출 추진
 - 對아세안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를 신설('18.9)하고 국제기구(한-아세안센터)에 인프라 전문관 운영 추진
- 전략시장과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MDB)에 주재관을 파견·지원하고, 親韓인사 양성을 위한 개도국 정책담당자 석사과정 신설('18.9)
- 동반진출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 해외건설업자'로 선정하고 정부지원 업체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18.11)

□ 분야별 해외수주 역량 확충

- (스마트시티) 월드뱅크 공동 개도국 확산사업('18~'19, 총 16억원)을 진행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 개최('18.9)
 - 우수 솔루션 수출을 위해 대상국가별 맞춤형 패키지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아·태 지능형빌딩 공모전(APIGBA Award) 개최('18.6)
- (물산업) 대한민국 국제물주간('18.9), 워터 비즈니스포럼 등을 통해 국내 물기업 홍보 및 해외 발주처 연계 등 해외진출 지원
 - 국제기구(UNESCO, UNCDF 등), 중국* 등과 공동연구 및 아시아, 중남미 등 물 부족 국가 대상 맞춤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18, ODA) 추진
 - * 도시홍수 방지 및 하천관리기술 개발 공동연구, AIB와 연계하여 해외시장 진출 도모
- (교통) OECD 국제교통포럼(ITF) 의장국 수임*, 교통협력 MOU 및 교통협력회의 개최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 59개국이 활동, 매년 장관회의 개최로 국제 교통 의제 주도, 한국은 '18.6~'19.5 의장국
- (첨단도로) 한국형 ITS 확산을 위해 수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로드쇼('18.4) 및 초청연수('18.10)를 개최하고 '22년 ITS 세계대회 유치 추진
- (철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분야·부품 분석을 통해 수출 로드맵('18~'22)을 마련하고, 타겟사업에 대한 체계적 수출전략 수립('18.5)
 - '18년 입찰이 예상되는 터키·말-싱 고속철, 인니 경전철(2단계)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수주지원* 강화
 - * 사업별 민관합동 TF를 통해 G2G사업(ODA 등)을 적극 발굴하고, 고위급 협력 강화
- (공항) 기존 低리스크 非투자 컨설팅 위주에서 건설·운영 패키지(스마트 공항 등) 투자 개발형 위주로 수주 전략을 전환*
 - * (운영권) 에콰도르 3개 공항, 인니 바탐 향나딤공항 등
(지분투자) 필리핀 지방공항,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등

◇ 분야별 국제 협력 추진체계와 해외인프라지원공사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수주경쟁을 총력 지원

① 지진·수해 등 재해대응 역량 강화

◇ SOC, 건축물에 대해 기존·신규시설 모두 내진관리를 강화하고, 동남권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수자원 비축 및 적기 공급 추진

가. 지진 대응

□ SOC 내진 보강 및 설계기준 강화

○ (기존시설) 국토부 소관 SOC 내진보강(23,315개 중 미보강 1,075개)을 '19년까지 완료, 리히터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 확보

○ (신규시설) 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도로·철도·공항·공동구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18년까지 개선·강화

*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17.3 공표, 행안부)을 적용하여 반영

○ (지자체 시설)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전문적인 관리능력이 부족한 지자체 도로시설* 내진보강을 위해 지원방안 등 수립 검토

* 도로교량 내진성능 확보율 : 국가 96%, 지자체 51%('16, 국토부·행안부)

□ 건축물 취약 부분 개선

○ (기존 건축물) 포항 지진 특성 및 피해,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내진보강 전략 수립*('18.10)

* 건축물 유형별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 보강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단계적인 보강전략 마련

○ (신규 건축물)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 개선('18.10)

- 필로티 등 복잡한 구조계산이 필요한 건축물 설계 시 구조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건축사 대상 내진설계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

□ 지반 안전성 점검

- **활성단층·액상화** 현상에 대응하여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SOC 안전 확보 방안도 검토('18.12)
 - * 액상화 문제가 제기된 동해선 포항-영덕 철도는 정밀안전진단 既시행('17.12)
-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기울사고 예방**을 위해 지반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공사과정에서의 **감리확인 명확화**('18.9)

□ 복구지원 체계개선

- 지진대응매뉴얼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현장수습지원단 운영절차 추가) 하고 국토부에서 지원 가능한 **임시거처·주택자금 융자** 등 강화('18.3)

나. 가뭄·홍수 대응

□ 가뭄 대비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여 **모든 댐에 대해 필요 수량만 공급하면서 댐 용수 감량 및 비축을 최대한 실시**(‘조정 기준’에 따른 긴축운영 철저)

	유역 평균 강수량('17.1월~)	저수량('18.1월 현재)
다목적댐	평균 978mm (예년의 78%)	58.3억톤 (예년의 97%)
용수댐	평균 704mm (예년의 54%)	1.32억톤 (예년의 69%)

- 강수량이 크게 부족한 **보령댐 등***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 * 보령('17.3)·밀양('17.12)댐은 ‘경계’ 단계, 주암댐은 ‘주의’ 단계('17.7), 부안('17.11)·합천('18.1)댐은 ‘관심’ 단계, 저수량이 부족한 용수댐(운문·평림·대곡·사연)도 관리 중
 - 저수율이 가장 낮은 **운문댐**(금년 봄 저수위 도달우려)은 **비상공급시설**(펌프장, 관로 2.6km)을 설치('18.2)하여 금호강 물로 대체 공급을 실시
 - 보령댐은 **도수로**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밀양·부안·합천·평림·대곡·사연댐은 **광역·지방상수도 대체공급**을 시행(절수홍보도 적극 병행)
- 댐 운영·관리가 중요해진 여건을 감안, ‘댐건설장기계획’을 ‘**댐종합관리 계획**’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수력발전댐의 수공 위탁·운영 추진('18.5~)

□ 홍수 예보체계 강화 및 취약지역 개선

- (예보강화)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및 예측 강화(3시간 → 6시간前)를 추진하고, 종합관제센터 설치('18.12) 등 홍수예보 내실화

* ('17) 50개소 → ('18) 55개소 → ('19) 60개소 → ('20) 64개소 → ('21) 67개소

- 하천 고수부지 실시간 침수 예측정보 제공 확대('17, 한강·낙동강 → '18.5 4대강 권역), 통합홍수정보시스템 구축('18~'22) 등 정보제공 확대

- (취약지역 정비) 맞춤형 하천정비('18년 9,167억원, 451개소) 및 댐상·하류, 홍수피해 도시 지방하천의 종합관리방안 추진

- 관계부처 공동 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선도사업*을 본격 착수('18.8~)하고 사업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제정** 추진

* 청주 무심천, 천안천, 고창천, 여수 연등천, 창원천, 경주 칠평천, 울산 유곡천 등 10개소

** 국토부·행안부·환경부 공동 「(가칭)도시침수예방 특별법」 제정 추진('18.12, 법안 마련)

□ 안정적 물공급 시스템 구축

- (선제적 가뭄 대응) 기상·하천 등 실측자료를 활용하여 가뭄 예·경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지역별 가뭄 취약지도 구축('18.6~) 등 추진

- 대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지하수댐(안마도, 대이작도) 및 대산산단 해수담수화를 착수하고, 해수담수화 추가 도입도 검토

- (거버넌스 강화) 경남-부산, 대구-구미 등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주민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해결방안 모색

* 하천수 취수시설 관리 현행화, 허가량 조정 등 합리적 하천수량 관리 병행

- 상습 가뭄지역인 충남도에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18.1)하여 근원적인 가뭄대책 마련('18.12)

◇ 재난 대응력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을 통해 도시방재정보**를 공유하고,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도 확대*

* 풍수해저감계획도(행안부), 홍수위험지도(국토부), 산사태위험지도(산림청) 등

** 그간 재해취약성 분석면제 대상이었던 도로·철도 등 선형기반시설 등 포함

② 안전한 생활 및 근로환경 조성

◇ 화재, 노후시설물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현장점검·안전관리를 지속하여 크레인·건설현장 안전대책의 정책시차를 최소화

가. 화재안전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 화재고위험요인(건축물 용도,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구조 등)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방식을 도출하여 고위험 건축물부터 단계적 조사 착수('18.1~)
 -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부터 조사하되, 향후 공장, 운수시설, 창고, 숙박시설, 노유자시설로 조사 확대
 - * 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가 포함(전체 140만동 추정) → (2차/'18.3~4월) 공장·운수시설·창고, (3차/'18.5~6월)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등 확대
- 조사결과 화재 고위험 건축물로 평가된 건축물은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안전 강화
 - 저비용으로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공법 제시, 단열재 시공비 이차지원 등을 통한 민간의 시설 개선 유인 마련('18.12)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방부서·소유자·관리자 등과 공유·활용*하고 개선 유도
 - * (소방관서) 화재진압 및 예방계획 수립시 활용 / (지자체) 관할 지역 내 건축물 관리시 활용

□ 신축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 강화

-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시행*('18.6~)하여 단열재 성능을 관리하고, 취약 공사현장·제조업체 불시점검 및 처벌 강화('18.12)
 - * 단열재 등 성능표기 의무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 화재기준위반자 처벌 강화 등
- 가연성 단열재 사용금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필로티 주차장의 화재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 추진('18.7)
 - * (예) 필로티 주차장내 방화구획 설정, 필로티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의무화(소방청 협의) 등

나. 시설물 안전

□ 노후 시설 관리

- (SOC) 노후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체계와 재원대책을 정립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17.11, 발의) 제정 추진(‘18.10)
 - * 주요 쟁점(성능개선 총당금, 부담금, 지자체 지원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공감대 확산 노력도 병행
- (건축물) 노후화*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법」 제정 추진(‘18.10)
 -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 (‘05) 29% → (‘10) 34% → (‘15) 39% → (‘20) 50%
 - 건축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서민 삶과 직결되나 품질이 열악한 소형건축물에 대한 품질확보 대책 마련(‘18.10)
 - * 설계·시공 부문 ‘우량업체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소형주택에 대해 성능평가 후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품질인증제도’ 도입

□ 시설물에 대한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

- 3종 시설물 관리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설 관리주체(지자체 등)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 실시
 - * 3종시설물(17만개) 신설 및 SOC 성능평가(1.7만개) 도입을 위해 「시특법」 전부개정(‘18.1월 시행)
- 안전점검·진단기관의 적합여부 평가* 및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도모
 - * (‘17) 60개 점검·진단기관 평가 → (‘18) 80개 점검·진단기관 평가
 -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여 의무 소홀 관리자 엄정 처분
- 「지하안전법(‘18.1 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하공간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 매뉴얼 배포 및 중장기 로드맵 마련
- 특수교 낙뢰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특수교 피뢰·소방설비 보강(~’20)

다. 건설현장 안전

□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

- 20년 이상 노후장비 연식제한·부품인증제 도입,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설비 안전성 강화 추진('18.6)
- 장비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장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18.下) 및 허위등록 여부 전수조사(~'18.4)
 - * 등록부터 폐기까지 사용·정비·검사·사고이력을 통합관리(현재는 등록·검사정보만 관리)
- 검사 내실화를 위해 검사내용 확대, 검사기관 평가제 도입, 부실기관 처벌 강화 등 검사제도 개편('18.6) 및 검사기관 불시점검 연중 실시
-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 강화 등 현장관리 구조 측면에서의 추가 개선방안도 강구('18.1)
 - * 국토부, 발주처(LH·SH), 원청, 임대업체, 설치·해체업 현장근로자, 전문가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구조개선 T/F」를 통해 방안 구체화('17.12~)

□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 (제도 개선) 계획단계에서 적정한 공기 및 안전관리비를 확보*하고, 사전안전관리활동 평가·공개 등 공공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 * 공공발주 시 토지보상 등 사전작업 완료 후 공사착수, 안전관리비 낙찰율 배제(지침개정 등, '18.6)
- 중대사고에 대한 벌점 신설 등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원수급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국토청의 현장점검 기능을 제고*('18.12)
 - * 지방청 내 현장점검 전담인력 36명 총원, 제도 이행 확인을 위한 전산망 구축 착수('18.8)
- (첨단기술 활용)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안전 사항을 강화하고, IoT 등 첨단기술을 현장관리에 활용하는 안전 확보방안도 검토
- (부실방지대책 수립) 사업관리 역할 강화*, 적정공기 확보, 발주청 전문성 보완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 수립('18.3)
 - * 건설사업관리자 적정인원 확보, 적정 권한 부여, 교차 감리제도 도입 등

3 예방적 교통안전 강화

◇ 주행·보행문화 개선, 관제·보안 강화 등을 통해 예방적 안전체계 구축

가. 도로분야

□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 체계 개편

-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차량 소통 중심에서 사람의 안전·생명을 우선하는 교통정책으로 전면 개편
 - *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도입, 첨단 기술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등 교통문화 혁신 도모
-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설계(교통섬·지그재그 도로 등) 기준을 마련('18년)하여 신규건설 및 개선사업에 적용('19~)
 - 마을통과 구간 도로 안전시설 보강, 보행로 설치 확대, 횡단보도 조명시설 개선 등 생활밀착 도로시설에 대한 안전개선사업 추진*
 - * 횡단보도 조명보강('18년 718개소), 마을주민 보호사업('21년까지 매년30개소) 등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시설 장비를 확충하여 교통약자 보호 강화

□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

- 급커브, 폭이 좁은 도로 등 위험도로 구간과 사망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
 - * (위험도로) '17년 65개소 개선에 이어 향후 5년간('18~'22) 위험도로 200개소 개선
 - * (사고 잦은 곳) '22년까지 매년 60여개소를 발굴, 꾸준히 개선
- 고령 운전자 증가,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표지 글자 크기 확대 등 도로표지 개선방안 마련('18.11)
- 노후 기계식 주차장 시설의 정밀안전검사를 제도화하고, 기계식 주차장 사고보고 의무화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업자 차량 안전 관리 강화

-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버스·화물차에 LDWS 장착 지원*, 버스 조기 대폐로 AEBS 장착 신차 구입시 혜택 제공**
 - * 既운행중인 버스(9m 이상), 화물차(20톤 초과) 대상 약 15만대(국비·지방비 각 20만원)
 - ** 국비·지방비(각 125만원) 지원 및 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 LDWS 보조금 지급시 운전자의 임의조작 금지 설정,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실행력을 제고하고 효과분석·반영 추진
- 위험물질 운송에 대해 모니터링 시범운영* 실시, 고령운전자 자격 유지검사 및 노후차량 차령 제한(ex, 10년) 도입 검토
 - * 위험물질 운송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8.12) 및 시범운영(300대, '18년 예산 18억원)
- 과적정보를 지자체·경찰청과 공유하여 적재중량을 단속('18.7~)하고, 적재기준을 마련('18.11)하여 적재불량 근절

□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구축

- 교통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ITS 기반 긴급차량 위치 제공* 및 안개시에도 사고확인이 가능한 첨단 시스템 확대('17년 16개소→'18년 19개소)
 - * 긴급차량 출동시 전광판·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위치정보 제공(소방청 협업)
- 터널사고 발생시 30분내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터널 통합 관리망을 구축 검토 추진

◆ 도로분야의 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7년 4,191명(잠정)에서 '18년 3,800명 이하로 감축 노력

- 효과적인 대책 실행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범정부 홍보·교육 협의회를 운영('18~)하고, 언론사 합동 범국민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나. 철도분야

□ 노후 철도시설 안전강화

- 수도권전철, 도시철도* 등 노후화된 철도시설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에 대한 개량계획을 수립('18.11)

* (개량대상) 30년 이상 경과된 서울 1~4호선, 부산 1호선 / (국고지원율) 서울 30%, 이외 50%

- 철도시설의 점검·성능평가·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의무화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 강화('18.8)

□ 철도차량 관리 및 운행안전 고도화

- (차량정비) 철도차량 정비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조직 인증제 및 정비기술자 자격제도를 도입('18.10)

- 20년 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도 추진('18.10)

- (철도관제) 구로관제센터의 초과된 관제용량*을 분산하고, 비상 시 중단 없는 관제수행을 위해 제2관제센터 건립 등 추진방안 마련('18.10)

* 노선확대 등으로 당초 관제설계(438개역)를 초과한 686개역을 관제 중

- 전원공급체계 이중화('18.6) 및 컴퓨터시스템 다중화를 추진하고, 인적오류 방지를 위해 이선(異線) 진입방지장치를 확대설치('18~)

□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준사고 보고 및 자율 보고제* 도입 등 보고체계를 예방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대응('18.12)

* (준사고) 철도사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의무화 (자율보고제) 내부 고발자 자율보고 및 면책제도 도입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철도운영자의 위험도 실태평가를 의무화('18.6)하고, 종사자 중심으로 작업매뉴얼 전면정비('18.12)

-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설계(도입)부터 철거(폐기)까지 생애주기(Life-Cycle) 이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18~'21)

다. 항공분야

□ 항공 안전체계 고도화

-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통합분석하여 항공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굴·분석·제거하는 **지능형 안전관리에방체계 구축***
 - * ('17.10~'18.8) 기획연구 → ('18~'22)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9.12~, 시범 활용)
- 항공사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도 평가·공개 제도* 도입('18.10), 조종사 자격심사 이관(정부→항공사) 등을 통해 자발적 안전 강화 유도
 - *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제 운수권 배분 등에 반영
- 노후기(20년 이상)대상 정비기준 강화 및 항공사별 노후기 정보 공개를 검토('18.9)하고, 급성장 LCC 항공사*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실시
 - * 보유항공기 규모가 급성장(25대 도달)한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3개 항공사

□ 헬기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 헬기·훈련기 대상 현장 불시점검 등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진화 헬기입찰 개선(안전평가 신설), 훈련기 정비 이행실태 점검('18.2) 추진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업무(現지방청)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일원화 하고, 유인기구(열기구 등) 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기 분류추진('18.12)

□ 빈틈없는 항공관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축

- 위기상황시 컨트롤 타워가 되는 '항공교통통제센터'를 운영('18.1)하고, 공항 및 비행안전 강화대책('18.6), 관제사 피로관리제도 마련('18.3~'19.6)
- 통합 탐지장비인 All-In-One 보안검색장비를 개발('18.12)하고, 거동 수상자 등에 대한 행동탐지요원 제도화*('18.12)
 - * (시범운영 완료, '17.1~12) 인천공항 131명(日 43명), 김포공항 64명(日 21명) 투입

4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

- ◇ 미세먼지·온실가스 저감 등 첨단기술을 건축·수송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통합적 물관리 추진

가. 미세먼지 저감

□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 고속도로 유희부지와 기존 휴게소 등을 활용하여 전기·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차 충전인프라를 확충

* '18년 경부선·호남선·영동선·당진영덕선(각 2개소) 등 교통량이 많은 곳 우선 설치(8개소) ('22년까지 도공 60여 개소 확충 후 민자도로 등 30개소, 도시부 70개소 추가확보)

- 택배업에 친환경 소형 화물차(1.5톤미만 전기·수소차) 도입을 확대하고, 버스 CNG 전환도 지속 확대*

* M-버스 노선신설 및 증차는 CNG 버스에 한해 허용하는 등 전환 유도

□ 건설·도로 현장 미세먼지 저감

- 비산먼지 방지 등 건설현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미세먼지 흡착이 가능한 첨단 건설재료 개발(R&D, '18.4~, 예산 160억원)

* 환경관리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방법, 규모 등을 구체화('18.5)

- 화단 설치기준 개정 등 도로 재비산 먼지 최소화 방안 마련('18.6)

나. 온실가스 감축

□ 온실가스 감축 전략 마련 및 제도 확산

-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에 맞춰 건물·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18.6)하고 부문별 감축전략 제시*

* (건축) 제2차 녹색건축 기본계획(안) 마련, (수송)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수정

- (건축) 교육시설·소규모 주택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도시재생 연계사업 추진('18.6)
- (수송) 국제항공 부문 ICAO 탄소상쇄제도(CORSIA) 시행('21)에 대비하여 국내 이행체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18.9)
 -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 사용 촉진(R&D, '18.1~), 엔진 배출기준 정비('18.12, 항공기기술기준 개정) 등 추진

다.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추진

- 국토부(수량), 환경부(수질)로 나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수량과 수질의 균형 있는 통합 물관리 추진
 - * '17.5 정부 방침 발표, '17.10~11 국회 물관리 협의체 논의, '17.11 정부조직법 발의
- 시민단체, 정부·공공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물관리 포럼* 논의('17.8~)를 통해 국가 및 유역별 물관리 비전 마련
 - * 民·官·學 총 170여명 참여, 6개 분과위원회(정책, 법·제도, 4개 유역)로 구성

□ 4대강 보 처리방안 마련

-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용수이용 상황, 시설 영향, 수질·생태계 변화 등을 모니터링·평가하여 보 처리방안 마련('18.12)
 - * 지하수·하천변화 상황 등 현장점검 강화, 주민·지자체·민간전문가 의견수렴

□ 낙동강 하굿둑 생태복원

- 낙동강 하구 기수역 복원을 위해 하굿둑 운영 개선(해수유통 염분 영향 검토 등) 관계기관 공동연구 시행(~'18.9)
 - * 수문개방 시나리오별 사전영향 분석('18.1~'18.9), 시범운영 검토 등('18.10~)

4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서민 주거복지 기반 강화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로드맵」의 가시적 성과 창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도입,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등 생애단계별 주거지원 실행
- 공적임대 1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등 공적 주택 18.8만호 공급

< 주거복지로드맵 '18년 이행계획 >

지원대상		주택지원	금융지원 등
생애 단계	청년	· 공적임대 4.4만실(3.2만호) · 행복주택, 민간임대 제도개선	·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신혼	· 공공임대 3만호 공급 · 특별공급 확대 등 제도개선	· 신혼부부 전용 대출 도입
	고령	· 공공임대 9천호 공급 · 안심센서 설치 근거 마련	·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취약 계층	· 공적임대 9.9만호 공급 · 취약계층 지원사업 활성화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 주거지원

- 맞춤형 청년주택 4.4만실을 공급(공공임대 2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실 부지확보)하고,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18.3)

* (현재) 대학생, 사회초년생 → (개선) 만 19~39세, 대학생, 사회초년생

- LH 매입임대주택을 청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청년단체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18.9, 100호 규모)
-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고시원을 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시설 개선 후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2%→1.5%, '18.3) 하고, 학교내 기숙사 용적률 규제를 완화(국계법 시행령 개정 '18.12)

-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기숙사 건립지연 방지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 마련('18.6)
- 금리를 최고 3.3% 적용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등 비근로소득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강구
 - 월세대출 한도상향(월 30 → 40만원) 및 전세대출 지원강화*
 - * (지원대상)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불가 → 만 19세 이상이면 대출 허용('18.1)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만 허용 → 분할상환형 대출 도입('18.7)
- 청년의 창업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단지내 상가를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 추진('18.3월~)
 - * 시세의 50 ~ 80% 이하 수준으로 청년,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

□ 신혼부부 주거지원

-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는 4만호의 입지를 확정(2만호는 지구 지정까지 완료)
- 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확대('18.6)*하고, 신혼부부 특화 단지 등 공공임대 3만호 공급
 - * 혼인 7년 이내 유·무자녀 부부 및 예비부부(현재 5년 이내 유자녀만 지원)
 - (건설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등의 우선공급 비율을 15→30%로 확대하고, 행복주택도 확대하여 '18년에 1.8만호 공급
 - (매입·전세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규 도입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8년에 1.2만호 공급
 -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지원단가를 상향(호당 1.05 → 1.5억)
-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 출시('18.1)
 - * 금리인하 : (구입) 2.05~2.95% → 1.70 ~ 2.75% (전세) 1.6~2.2% → 1.2~2.1%

□ 고령가구 주거지원

-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공공임대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 주택 안심센서 설치 근거 마련('18.6, 주거약자법시행령 개정)
-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각대금을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추진('18.7)

< 연금형 매입임대 사업구조(안) >

- (대상주택) 매입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棟 단위) 주택 등
- (지급기간) 매도인이 기간을 선택(10년~25년)
- (지급금리) CD금리 등을 반영하되 시중 금리상황에 따라 조정
- (공공임대 제공)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고령층 매도자에게 우선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 공적임대주택을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우선공급('18.6, 공특법 시행규칙 개정)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18.10)하여 54만가구를 추가지원(82만→136만)하고, 기준임대료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18.12)
-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를 위해 긴급지원주택을 공급('18.12)하고, 非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18.6)
 -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을 강화('18.3)하고, 연소득 2천만원 이하 2자녀 가구에 대해 버팀목대출 금리 0.2%p 우대('18.1)
 - * 보호대상인 경우 무상지원, 보호종결 후 5년간 임대료 50% 인하
 -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0.5%p 금리 우대 중
- 디딤돌대출 지원규모를 확대('17년 계획 7.6조 → '18년 계획 9.8조)하고, 금리를 최대 0.25%p 인하(2.25~3.15%→2.00~3.15%)하여 서민 지원 강화('18.上)
 - 1인 가구에 적합한 단독세대주 전용 디딤돌대출 출시('18.2)
 - 가계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5천만원이하에서 쏘소득구간으로 확대('18.5)

나.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적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급(준공)

- (공급물량) 건설형 7만, 매입형 2만, 임차형 4만호 등 13만호 공급
 - 건설임대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28만호**(지난 5년 15만호)로 확대('18.3, 업무처리지침 개정)하고, '18년에는 **4.2만호** 공급
 - 매입형은 신혼·청년 매입임대주택('18년 4천호), 신혼부부 임대리츠('18년 2천호)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지원단가 상향
- (도시재생 연계) 공공 리모델링('18년 2천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등 도시재생과 연계 강화

□ 공공지원주택 4만호 공급(부지 확보)

- 공공성 강화방안을 적용한 선도사업('17.11 착수) 성과를 검증하고, 다양한 사업지를 추가하여 연내 총 4만호 부지 확보
 - 청년 등 특별공급 입주자격(소득기준), 무주택자 확인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18.下)
 - 임대료가 저렴한 세어형 민간임대주택 시설기준 등 지원방안을 마련('18.下)하고,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시설* 도입
- * 입주민인 청년 등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취·창업 지원 등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공공분양주택 1.8만호 공급(착공, 분양)

- '18년 1.8만호('17년 1.5만호)를 분양(착공)하고, 매년 분양 물량을 확대하여 '18~'22년간 연평균 3만호를 공급(최초 분양 '18.4월)

□ 신규 공공주택지구 개발

-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9개 지구를 포함한 20여개의 지구를 지정하고, 잔여 20여개 지구도 연내에 지구지정 제안('18.12)
- * 신규 택지개발이 주변지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도 병행

다.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체계 개편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18.6, 개정안 제출)

* 국토부·법무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소관 범위·법률 운영방안 마련

□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및 주거복지전달체계 확충

- (공공임대 체계 개편) 입주기준 및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18.9, 개선안 마련)

* 국민주택, 영구주택, 행복주택 → 수요자 기준으로 통폐합

- (분양전환 개선) 분양전환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임대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18.6월)

- (영구임대 재건축) 도심의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모델 마련('18.10월)

- (지자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자체·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친 경우 투자 심사절차 개선

* (지자체 사업)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 등을 거쳐 행안부에 투자심사 면제 요청

** (지방공사 사업) 투자심사를 받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타당성 검토 면제

- (주거복지센터) 지역 특성에 맞는 표준모델 구축('18.6) 및 마이홈 센터를 확대('17년 42곳→'18년 52곳)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제공

* 대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을 연계하여 정보 접근성을 확대

□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 (육성지원) 2%대 저리융자 도입(최장 20년) 및 대출요건을 완화('18.3) 하고, 사회주택 지원센터(HUG)를 설립하여 상담·보증·사후관리 지원('18.6)

- (허브리츠)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하여 출·용자 및 토지임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LH 협력형 시범사업 추진('18.3, 수원·고양)

②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17.12.13)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 및 정보인프라 구축 완료
 - ☞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0만호 확대하여 총 120만호 확보

□ 임대차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행정지원 강화

-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가 보유한 주택소유, 임대차계약 자료를 연계 하여 주택보유 및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는 DB 구축(18.4)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자가여부	가격정보	거래정보
국토부	국세청	대법원	국토부	행안부	행안부	국토부	국토부
· 임대등록 시스템(LH) · 확정일자 신고자료 (RTMS)	· 월세세액 공제자료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자료	전세권 등기 자료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 자료	· 공시가격 · 실거래가 신고자료 (RTMS)	· RTMS
▼							
임대차시장 통계 생산							

- 개인이 보유한 전체 주택현황을 파악하고, 임대가능한 주택을 등록임대와 미등록임대로 구분하여 파악
- 생성된 통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위주로 주택보유현황, 미등록 임대사업자 정보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기적으로 공유
- 임대사업자의 등록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는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 하고(18.4), 지자체의 전담인력도 확충(18,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인상)
 - 지자체에 임대등록시 세무서에도 사업자 신고가 되도록 하고, 주소지가 아닌 주택 소재지에서도 등록 허용
- 임대차 계약시 등록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등록임대 여부, 임차인 권리(임대의무기간 내 계약갱신청구 등)를 고지토록 하고,
 - 마이홈*을 통해 임대등록 과정 및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상세 안내

* www.myhome.go.kr, 콜센터 1670-8004, 전국 42개 상담센터

□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가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 상향* 및 단독주택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 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 보증료 할인 확대(30→40%) 등 추진('18.2)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 → 7억원, 지방 4억 → 5억원
 - ** (현행) 대출채권+임차보증금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인 경우 가입 허용 (개선) 단독·다가구는 선순위채권 80% 이하(대출채권 60% 이하)까지 허용
 - 모바일 가입 시스템 도입('18.3), 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 허용('18.6)* 등 보증 가입 편의성 확대
 - * 현재 주금공 전세자금대출보증과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 불가
- (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임대료 증액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기준 마련('18.3)
- (계약갱신 거절기간 단축)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계약 만료 1개월 前'에서 '계약 만료 2개월 前'까지로 단축('18.12, 주택임대차법 개정)
-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18.12, 주택임대차법 개정)
 - * 현재는 임차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조정 개시 불가
- (소액보증금 보호 강화)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18.12,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 등록사업자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

- 기재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 감면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18.12)

< '18년 세법 개정 필요사항 >

구분	주요 내용
지방세	· '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재산세 감면 확대(소형·다가구)
임대소득세	· 1주택만 임대해도 감면(4년 35%, 8년 70%) · 필요경비율 차등화(등록 70%, 미등록 50%)
양도·증부세	· 8년 임대시 양도세 종과배제, 장특공제 70% · 증부세 합산배제 기준 강화(5년 임대→8년 임대)

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 8.2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지방시장 침체에도 대비

□ 8.2대책·가계부채 대책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18.1), 新DTI('18.1)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18.4)를 차질 없이 시행

* 시행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매뉴얼 배포 및 담당 공무원·조합 교육 등 실시

-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자금조달계획·입주계획에 대한 조사도 지속 추진

* 자금조달계획을 RTMS로 모니터링하고, 과태료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본격 운영하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증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강화('18.4)

○ '조세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

- 시장 불안이 증폭될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침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필요시 역전세난 등 서민 피해 방지방안 마련

* 세일앤리스백리츠를 도입하여 한계차주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로 제공하는 방안 등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13~'22) 수정안 마련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간 변화된 주택시장 환경, 대내외 경제여건,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 주택 수급 전망, 공공주택·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장기 주거종합계획의 수정안('18~'22)을 마련하고, '18년 주거종합계획도 병행 수립

○ 중장기 수급 전망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의 단계적 후분양 시행과 민간부문의 후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18.上)

4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래형·고품격 디자인 주택을 공급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등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 지속가능한 미래형 주택 공급 확대

- (제로에너지) 신축하는 모든(민간·공공) 소형주택(60㎡ 이하)에 패시브* 수준의 기술이 적용되도록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선('18.12)
 - * 단열 등을 통해 에너지손실 최소화 ☞ '09년 기준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률 60% 이상
- (장수명주택) 기술 적용이 유리한 원룸·세대구분형 주택에 대한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 기준을 마련('18.6)하여 보급 확대 유도
 - '18년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장수명주택 인증을 의무화하고, “양호” 등급 이상의 시범단지 건설(서울 양원 등 3개 지구, 3,037세대)
 - * 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으로 구분
- (스마트홈) LH 공공주택에 특화된 스마트홈 표준모델 마련('18.6) 및 시범단지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 홈 IoT 등 플랫폼 구축('18.12)
- (모듈러주택) 재건축·재난 임시거처 등 수요를 발굴하고, 실증단지* 검증 등을 통해 비용절감·성능향상 등 효과분석 및 확산 기반 마련
 - * 1호 가양동 실증단지('17.12 준공), 2호 천안 두정 실증단지('18.2 착공)

□ 공동주택 디자인 개선

- 공공 부문에 정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민간 부문은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혁신 유도
 - * ('18) 신혼부부 특화주택(국민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등)에 대해 우선 검토
 - ** 국토부, 설계·건축·경관 분야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등 공동 참여 추진

□ 공동주택 소비자 권익 보호

- (先분양제한)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벌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18.6, 주택법 개정)

- (부실감리 차단) 감리자가 사업주체에 예속되어 부실한 감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18.6, 주택법 개정)
 - * (현행) 사업주체 → 감리자 / (개선) 사업주체 → 승인권자(지자체장) → 감리자

□ 공동주택 개보수 편의성 강화

- 1인가구·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려는 수요에 대응하여,
 - (개보수 편의성 강화) 기존주택 세대구분을 위한 공동주택 개축·수선 등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18.1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 * 개축·수선 요건 : (현행) 입주자 2/3 이상 동의 → (개선) 입주자·사용자 1/2 이상 동의
 - (제도화) 기존주택 세대구분에 대한 법적근거 및 건설·면적·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 유도(주택법·시행령 개정 '18.12)

□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의무관리대상 확대)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되 입주자 1/2 이상 동의 시 제외(법 개정, '18.12)
 - * 의무관리대상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사무소장 채용 등 의무 부과
 - 100세대 미만 단지도 입주자 2/3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
- (동대표 자격확대) 입주자(소유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세입자)도 입후보를 허용하여 비정상적 관리 예방(법 개정, '18.12)

□ 관리비 투명성 제고

- (내역 공개 확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를 비의무관리대상(30세대 이상)으로 확대(법 개정, '18.12)
 - * 의무관리대상에 적용되는 비목 중 일부(21개)만 공개, 세부명세는 선택 가능
- (감사절차 투명화) 입주자가 회계 감사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 공개주체를 관리소장에서 감사인으로 변경(법 개정, '18.12)

① 대도시권 교통혼잡 완화

◇ 광역교통청 설립을 통해 대도시권 교통난에 대한 조정·개선을 강화하고, 대중교통·급행철도 등 출퇴근 교통수단 지속 확충

□ 대도시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청 설립

- (기본구상) 대도시권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 행정구역과 별도로 생활권역 중심의 '광역교통청'을 설립·운영('18, 법령 개정)
 - (목표) ①출퇴근 시간 45분대 실현(교통수단 급행화), ②앞아서 출퇴근(2층 버스 등 대응량화), ③서민교통비용 절감(정기권 등 제도개선)
- * 대광청 조직 신설을 위한 근거법령 개정 후 관계기관 T/F 운영 등 본격 추진

□ 빈틈없는 대중교통망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광역버스) 운행거리제한을 완화(30 → 50km, '18.上)하여 교통비 절감*을 유도하고, M-버스 좌석예약제 적용노선 확대로 출퇴근 편의 개선
- * (예) 이천·평택 ↔ 서울간 운임 : 시외버스 5,000원 수준 / 광역버스 3,000원 수준
- (BRT)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의 BRT 종합계획*('18~'27)을 수립('18.6)하고, 기존사업(수원-구로, 부산 내성-서면 BRT 등) 지속 추진
-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을 대상으로 단기·중장기 사업 선정
- (고속·시외버스)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근거리 노선에도 확대하고, 시외버스 전산망 연계·호환을 적극 추진하여 예·발매 서비스 개선('18.下)
 - (환승시설) 삼성역·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지속 추진, 고속도로 휴게소·간이정류소 등 환승시설 확대(영·호남 환승센터, 북수원·판교 등)
 - (교통카드) 정기권·정액권 및 자전거·보행 마일리지 등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추진
- * '18년 중 울산·세종·전주시 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확대

-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외곽지역과 서울 주요 거점(서울·삼성역 등)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 광역급행철도망 조기 구축
 - * (A노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18.4), 협상 및 실시설계 병행 추진('18.11), 공사착공('18.12)
(B·C노선) 각각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 (기존선 활용) 수인선·경인선 등 '17년 급행화 된 4개 노선 외에 추가 시설 개량을 통해 급행열차 확대 도입*
 - * 경부선 우선추진('18.2 설계착수), 분당선·일산선·과천선 사업타당성 조사 등 추진
- (순환철도망) 서울 외곽거점에서 광역급행철도와 급행열차 노선을 연결하는 순환망을 구축하여 급행 서비스를 수도권으로 확대
 - * 사전타당성조사('17.12 ~ '18.5)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안 마련('18.12)

□ 운영효율을 통한 교통혼잡 개선

- 대규모 개발사업이 밀집되고 있는 수도권 동북부 등 권역별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체계를 개편*
 - * 중·소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 및 '先교통계획-後개발' 의무화 등
- 도심내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 조정권한을 확대('18.2)
 - * 교통유발계수 재산정 및 도시규모 세분화('18.12)
- 지역별 통행 패턴에 맞는 감응식 신호 확대('17년 164 → '18년 239개소)*, 신호주기 개선** 등을 통해 지·정체 완화
 - * 국도상 좌회전 차량이 있을 때만 신호를 제공('16년 효과평가 결과 : 통행량 18.4% 증가)
 - ** '22년까지 20여개 지자체의 신호기·분석시스템 등을 단계적 개선 계획 (美뉴욕·버지니아주 신호개선 결과, 통행시간이 각각 15.7%, 22% 감소)

②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 제공

◇ 그간 확충된 도로·철도 인프라를 바탕으로 접근성 제고, 관리체계 정비, 첨단기술 활용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서비스 제공

□ 고속도로 접근성 개선 및 서비스 혁신

- (대중교통 연계) 고속도로 본선, 휴게소 등에서 광역버스·철도 등과 환승 가능한 'ex-HUB' 단계적 확대('17년 9개소 → '20년까지 13개소)
 - (진출입 개선) 고속도로 휴게소·본선에서 주변 지역으로 진출입 가능한 하이패스 전용 소규모 IC 확대('17년 8개소 → '18년 11개소)
 - (휴게소 편의제고)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종합계획('18~'22)'을 수립('18.8)하여 차별화된 휴게소 서비스 제공 및 이용요금 개선
 - 휴게소 운영업체 평가기준 정비*('18.10), 직영 주유소 가격 인하, 매장 대기가 필요없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 도입(190개소) 추진
- * 임대 수수료 및 주요 물품별 가격수준을 평가지표로 신설하여 운영계획을 평가하는 등 '19년까지 식음매장 평균 수수료율을 시중매장 수준으로 인하(46 → 39%)

□ 도로관리 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노선은 시설개선·안전보강 등이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개선방안 검토
 - 균일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선을 선별*하고 지원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 정책과제를 발굴
-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 수립 시 합리적 개선방안 검토('18.1~)
- '20년 스마트톨링 본격 시행에 앞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18.3) 하고, 국민적 공론화('18.5)* 및 남해선 시범사업 중간점검('18.9)
- * 전문가,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18.5), 대국민 홍보 및 체험행사 계획('18.9)
- 고속도로 이용 정보를 스마트폰 앱으로 통합하여 고속도로나 휴게소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 적립·사용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18.10)

□ 철도 이용객 서비스 편의 제고

- (대도시권 이용편의) 철도 운행계획 조정, 시설 확대·개선 등을 이용수요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고속열차 서비스 확대 추진
 - 공항철도 KTX, 올림픽 이후 경강선 KTX 등 수요가 적거나 감축 예정인 노선의 차량을 기존선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18.12)
 - 인천·수원도 직접 출발·도착하는 KTX가 운행되도록 설계착수('18.6)
- (취약지역 접근성 제고) 고속철도가 직접 닿지 않는 지역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하고, 주요 역사에 카세어링 전용 구역** 설치
 - * 강릉~동해, 포항~영덕 등에 우선 도입하고 수요를 감안하여 확대
 - ** '17년 15개 역사(주차장 62면 지정) → '18년 29개 역사(주차장 105면 지정)
 - 콜버스, 리무진 등 신교통서비스를 철도역사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철도역 접근성 향상(철도역 연계교통 확대방안 마련, '18.10)

□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 공항 서비스

- (스마트서비스) 국내선 대기시간 단축(신분확인 5분 → 1분)을 위한 지문 이용 탑승수속 시범도입('18.1, 김포·제주)
 - 안내·운반 등을 위한 로봇 도입('18.6, 인천), 인천공항 제2터미널-장기주차장 자율주행 셔틀 시범도입('18.10) 등 첨단 인프라 구축
 - 수하물을 승객이 직접 처리하는 셀프백드롭 서비스 확대('18.1, 인천, 김포·김해·제주 연내), 직항승객의 액체류 보안봉투 폐지('18.7) 추진
- (접근성 제고) 다수의 항공사가 활용 가능한 항공-철도티켓 통합 발권 시스템을 구축('18.12)하고, 수하물 연계 수송체계 도입('19~)
 - 혼잡개선을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조기운영 및 입주항공사 확대
 - * 삼성동·서울역·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18.1월 개장)

- 주차혼잡 개선을 위해 주차빌딩*, 카셰어링 픽업존을 확대하고, 주차 혼잡안내 등이 가능한 모바일 앱 도입('17.12 김포, '18 김해·제주)

* 인천(T1 5,594면-'18.6~'20.12, T2 500면-'18.3~9), 제주(500면, ~'18.11) 등

- (택시요금 개선) 택시 부당요금 수취 근절을 위해 공항 등 특정 구간에 정액요금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 추진('18.11)

* (해외사례)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 ↔ 파리 시내 / 55유로 정액('16.1~)

□ 국민참여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국민평가단 구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버스 서비스에 대한 상시 조사,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데이터 공유) 대중교통 데이터를 대국민 공개('18.9)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산업육성 및 창업지원 등에 활용

* 10여년간 축적된 대중교통현황조사(대중교통 시설 이용인원, 이용금액, 혼잡도, 정시성, 환승실태, 서비스 만족도, 대중교통시설 정보, 운행현황) 등 공개

- (국민차장제) 버스운전자 졸음·난폭운전 예방, 사고 시 승객대피 조력 등을 위해 1열 탑승객들이 안전도우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 고속버스 일부노선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확대여부 검토

③ 거점간 효율적 네트워크 구축

□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

- (도로망) '18년까지 국가목표 간선망(7,266km)의 66%(4,778km)를 개통하고, '20년까지 국민의 96%가 30분 내 고속도로에 접근 가능한 도로망 구축

- 건설 중인 간선도로는 완공·개통시기*를 앞당겨 원활한 이동을 지원

* 국도 3개소 : 충북 인포-보은('19.11 → '18.12), 강원 오미재터널('19.12 → '18.12), 경북 소천-도계2('18.3 → '18.1)

- (고속도로) 단구간 확장, 접속부 개선, 갓길차로 확대 등을 통해 176km에 달하는 혼잡구간을 '20년까지 50%로 감축

* (연차별 혼잡구간 관리목표) '18년 117km → '19년 87km → '20년 76km

□ 효율적인 철도망 건설과 운영

- (고속철도망) 선로용량이 부족한 평택~오송 구간의 용량을 확충* 하고, 호남선 2단계(광주송정~목포)건설을 통해 고속철도 X축 완성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 (일반철도 고속화) 한국형 준고속열차*(EMU-250) 도입과 연계하여 「일반철도 고속화 추진방안」 본격 추진

* '20년 주요 5대 노선 운영을 목표로 '18년부터 차량제작 및 시운전('19.3) 추진

- (운영전략 강화) '건설 따로, 운영 따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철도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철도이용편의 극대화('18.12)

- 노선별 기종점, 투입차량 등 운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투자 방지, 선로용량 대비 열차투입횟수, 운행시격 등을 종합 관리

□ 지역 이동권 개선을 위한 공항인프라 확충

- (기존인프라) 항공여객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김포·제주·청주공항 ('18~'19완료) 등 지역거점 공항의 시설 확충 추진

* (제주) 유도로·계류장 증설, 여객터미널 확장·재배치 등('15~'19, 2,589→3,175만명/年)
(김포) 국내선 터미널 리모델링('18.9 완료), 국제선 터미널 편의시설 확충('18.3 완료)
(청주) 국내선 터미널 증축('18~'19, 189→289만명/年), 주차빌딩 1,088면 신축('18 완료)

- (신규공항) 김해신공항, 제주 제2공항은 '민·관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고, 지역 기여방안 마련 등을 통해 갈등 최소화

* (김해 신공항)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고시('18.8)

**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추진('18.12)

- 도서지역 교통편의 개선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울릉·흑산공항 건설*을 추진

* (울릉) 기본설계('16~'17) → 실시설계('18) → 공사('19~'22) → 개항('22末)

(흑산) 기본 및 실시설계('17.4~'18) → 공사('18~'21) → 개항('21末)

4 교통 이용자 권리 보호 강화

◇ 자동차 결함·하자 등 국민안전에 영향이 큰 자동차 리콜을 중점 개선하고, 택배서비스·항공 지연 등 국민 불편요소도 지속 개선

□ 결함·하자 차량 등 자동차 소비자 권익 강화

○ (리콜 강화)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제도개선TF 운영 등 지속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자동차리콜 종합대책」 마련('18.2)

* 인터넷(www.car.go.kr) 또는 전화(080-357-2500)로 자동차리콜 불만사항 접수

○ (한국형 레몬법*) 결함신차 교환·환불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교환·환불 요건, 신청방식, 효과 등 대국민 홍보 강화(연중)

* 신차에 동일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쉽고 공정하게 교환·환불

○ (연비보상 시행) 허위·과다연비인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금액, 수령방법 등 보상계획을 안내하고 보상토록 의무화('18.1)

○ (중고차) 포털을 통해 중고차 관련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매물 등 불법행위 처벌 강화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추진

○ (전손차량 관리) 사고·침수로 중대손상이 발생하여 보험사가 폐차한 차량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 확인제* 도입('18.12)

* 해당 차량의 재유통·재등록이 불가하도록 보험사가 폐차 의뢰시 반드시 폐차인수 증명서를 받도록 하고 해당 차량 목록을 국토부에 전송하여 관리

□ 대국민 자동차 정책 서비스 개선

○ (온라인 서비스) 국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자동차 관련 업무를 관공서 방문 없이 포털에서 처리 가능한 원스톱서비스 제공('18.3)

*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통해 자동차등록, 리콜대상 확인, 검사예약, 자동차 보험 가격비교 등을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www.ecar.go.kr)

○ (번호판 개선) 신차 구입 등 자동차 등록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마련('18.6)

□ 물류분야 소비자 보호 강화

- (택배) 강력 범죄자(폭력·성 등)의 종사자격 취득제한('18.下, 화물자동차법 개정), 손해배상액 현실화, 본사우선배상 추진('19~, 표준약관 개정)
 - 택배 포장방법, 피해구제 방법 등을 게재한 '택배이용 종합정보 안내서'를 배포하여 홍보하고, 콜센터 등 상담 인프라 구축('18.12)
- (국제이사)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및 보상처리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18.12)
- (콜밴·견인차) 콜밴 부당요금,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 콜밴 신고운임제 도입, 홍보강화* 등 추진('18.12)
 - * 외국인 승객이 대형택시와 콜밴을 구분토록 '화물' 외국어(영어 등) 표기 의무화

□ 항공·철도 운행지연 개선

- (항공) 중국·유럽·동남아행 항로 복선화 등을 통해 항로혼잡을 해소하고, 지연·결항률이 높은 항공사에 대한 제재 등 검토('18.12)
- (철도) 상습 지연열차 분석을 통해 운행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열차간 운행간격 조정을 통해 운행 지연 최소화
 - * 평택-오송, 청량리-망우 등 병목구간 중심으로 열차 간 경합 최소화

□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 (공제조합 개선)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강화 및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서비스 제고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18.7)
- (무보험차) 지자체·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장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18.12)

5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

◇ 인프라 첨단화를 통해 무인자율주행, 효율화, 안전혁신의 기반 마련

□ 첨단도로 구축

- 방음터널 등 도로 시설물을 활용하여 '25년까지 **쏠고속도로 소비 전력의 100%**를 태양광·연료전지 발전으로 공급
 - * 발전설비 구축계획(고속도로 사용 전력량 대비 발전량) :
('19) 155GWh (35%) → ('22) 289GWh (65%) → ('25) 440GWh (100%)
- 고속도로에 설치된 **광통신망 속도를 4배로 향상시키고(~'20), 무선 센서망을 늘려*** 시설물 원격 정밀검측 등 신규 기술시장 확대
 - * (비탈면 감지센서) ('17) 129개소 → ('18) 200개소 → (~'21) 1,200개소
- 차량 기술발전에 맞춰, **보다 빠른 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계 기준 개정('18.6, 120km/h → 140km/h) 검토 추진**

□ 첨단철도 인프라 기반 마련

- 국제기준에 맞춘 철도 성능시험이 가능한 **종합시험선로를 완공 ('18.12)하고 완성차 시험센터 운영('18~) 등 테스트베드 확충**
- **한국형 신호시스템 실용화**를 위해 안전성·성능검증* 및 시범사업을 추진('18.7~)하고, LTE 기반 **통신시스템을 신규·개량노선에 단계도입****
 - * (현장검증) 호남고속선: '17.4~'18.6(36회) / 원주-강릉선: '17.12~'18.6(60회)
 - ** 경강선에서 시범운영('18.1~) 후 신규·개량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 철도 안전시스템을 **첨단화**하여 철도 차량·시설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18~'22)**
 - * (차량) 운행 중 이상상태(발열·균열 등) 실시간 점검·경고 시스템 시범운영('18)
 - ** (시설) 시설물 노후도가 높은 구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18~)
- 3D 공간정보 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위험 人·物 사전감지 기반을 구축하고 철도 위험예보제*** 시행('18.12)
 - * 사고발생 추세·원인을 차량·시설 등 유지관리 데이터와 연계분석하여 위험예보 및 사전관리

6 교통분야 공공성 강화

◇ 주요 간선교통망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여 이용부담 완화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를 고려한 사람중심의 교통 인프라 구축

□ 철도 및 도로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

- (철도) 간선기능을 담당하는 고속철도는 민간에서 철도공단 투자로 전환추진, 일반철도도 희망 사업자가 없는 경우 재정사업으로 추진
- (도로) 국가간선도로망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道公 투자로 전환을 검토하고, 재정-민자 고속도로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추진
 - 유료도로법 개정('17.12) 후속조치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18.12)하고, 민자도로 유지관리기준 마련 등 추진('18.12, 유료도로법 하위법령 개정)

□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 (민자통행료 인하) 서울외곽 북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18.3) 등 3개 민자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통행료를 인하
 - * 서울-춘천('18.3), 서울외곽 북부구간('18.3), 수원-광명('18.4)
- (통행료 체계 개편) 화물차 통행료 할인을 확대('18.6)하고,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18.12)

□ 안전·운영중심 패러다임에 대응한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 도로·철도·항공분야의 안정적인 안전예산 확보를 위해 교특회계 내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추진
- 교통시설특별회계 개편 등과 연계하여 안전·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비율: (도로) 43~49%, (철도) 30~36%, (공항) 7%이하, (교통체계관리) 10%이하

□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사각지대 해소

- (지역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고, **버스운영체계를 합리화**
 - * 연내 공공형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내 버스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 추진
- (지역간) 간선철도망의 구축을 통한 **단절구간 해소**와 지·간선망 **환승편의** 및 철도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국민들의 **이용불편 해소**

□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 (저상버스) 고령자·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율 조정*** 및 **대·폐차 지원** 등 추진
 - *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 국비보조율 차등화 검토(현재 40~50%로 일률 지원)
 - ** 저상버스 도입 목표 : 전국 시내버스내 비중 ('17) 19% → ('18) 25% → ('21) 42%
-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등 이용자 증가 및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콜택시) **보급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 * 現법정 보급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을 전면개편하고 표준운영조례 마련('18.下)
- (철도·지하철)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고, 교통약자에게 철도역 내 최적 동선을 안내하는 R&D 시범사업 추진('18.2)
 - * 서울도시철도 73억원 지원('18)
- (항공) 항공권 구입-공항 이용-항공기 탑승 등 서비스이용 **소 과정**에 거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 기준*** 마련('18.12)
 - * (예) 임산부·영유아 동반 승객 앞자리 우선 배정, 노약자·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제공 등
- (생활환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터미널, 역사 등 **신축 교통시설***에 대해 **BF(Barrier-Free) 인증 의무화**('18.12)
 - * 현재 국가·지자체의 신축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만 인증 의무화(장애인편의보장법)
 -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 * 휠체어 승강 설비, 보도 턱, 이동통로 폭, 음향신호기,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등

① 지속가능한 국토기반 조성

- ◇ 인구감소·저성장에 대응하여 압축적·효율적인 공간 이용, 재생 중심의 관리 등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인구감소 대응을 설정, 신규 개발 보다는 기존 거점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

□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국토 장기비전 설정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 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국토비전 마련
 - * '18.3월 착수(발주) → '18.12월 시안 마련 → '19년 중 의견수렴 및 확정
 - 압축적 공간구조*, 포용성 강화, 스마트·안전 국토 조성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슈에 대하여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제시
 - * 도시재생 등 旣개발지 중심의 공간 활용, 교통·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 강화 등
 - 청사진(blue print)형 계획을 전략형·지침형으로 전환하고, 실증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격자형 국토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참여모델(국민참여단, 공론화쉴 등)을 본격 구축하여 하위계획에 확산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을 수도권집중 억제, 난개발 해소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핵심가치로 반영하여 수립('18.4~'20.10)
 - * 정책대상별 '수도권 적정개발 지표' 개발, 주요 대도시권과 비교·평가 체계 구축

□ 압축적 관리를 반영한 하위계획 정비

- 압축적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계획체계를 개편하고, 계획 인구, 기반시설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
- 계획간 정합성 제고, 현실성 있는 하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 계획 평가방식 및 대상*을 정비하고 평가에 대한 피드백도 강화
 - *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누락된 중장기·지침적 계획을 대상으로 추가 검토

□ 포용적인 국토 조성 기반 구축

- 유엔해비타트 ‘새로운 도시의제’(지속가능한 포용적 도시)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등에 반영('18.12)
 - * 도시계획에 주민자문단 참여 의무화, 보행자 중심의 가로망계획 수립 등
- 의료·교통·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을 마련('18.12)하고, 낙후지역은 우선 지원*하여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 「생활인프라 국가최소기준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17.12~'18.12)를 통해 생활인프라의 개념, 지표 설정, 법 제정 등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 국토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을 제정(국토부·환경부, '18.3)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부터 적용

□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 (경제협력)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을 중심으로 남북 경제협력 벨트**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 구축
 - *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단계별 실행전략 등 마련('18.下)
 - ** ①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②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③ DMZ환경·관광벨트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공동으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북방 지역 국가와의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구체화
 - * 철도, 가스, 항만 등 9개 분야 핵심협력 사업 및 해외인프라 사업 등 추가 발굴
- (인프라 연결)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역, 9.3km) 공사 재개 및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110km)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
 - *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재·통일부와 협의
- 건설 중인 남북 접경지역 고속도로(서울~문산 35.2km, '15~'20)는 적기 완공하여 남북 간선 도로망 구축

②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

◇ 계획계약 시범사업 등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시즌2, 새만금공사설립 추진 등 지역거점 육성 본격 추진

□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체계 구축

- 혁신도시·행복도시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토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계획계약 시범사업 추진('18, 공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역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디자인 관리체계 도입('18.5)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 지원
 - * 융복합(6차 산업 등), 재생형, 연계·협력 사업 등을 중심으로 11개 시범 컨설팅 추진

□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강화

- (혁신도시)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 마련('18.10)
 - '살고싶은 미래형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등 혁신교통체계를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기술*도 적용('18.12)
 - * 이전기관 특성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구축(예: 나주 에너지, 김천 교통)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18.1, '22년까지 30%), 인재양성을 위한 오픈캠퍼스 개설('18.7),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역할 강화
 - 연관기업 이전촉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개소('18.12) 등을 통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
- (행복도시) 행정기관 추가이전 등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중부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변경*, 지역교류 활성화 등 추진
 - * 광역권내 인구규모 설정, 녹지관리계획, 경관계획, 도시별 기능분담 및 연계전략 마련 등

-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국제협력용지 일부를 선도 매립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 매립·개발에 착수
 - 「재생에너지 3020」과 연계, 태양광·풍력사업 추진('18.9, 계획수립)

□ 산업단지를 활용한 혁신생태계 구축

- (판교 2벨리) 창업 및 혁신성장 생태계의 선도 모델로 조성하고, 다른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혁신성장 모델 확산*
 - * 지방 도시첨단산단(대구)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계획(안) 마련('18.12)
 - 기업성장센터 등 공공임대 창업공간을 확대(500개 → 1200개社)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의 창업·혁신 프로그램을 종합 지원
- (국가산단) 전주(탄소) 산단지정을 완료한 뒤, '17년 지정된 경남(항공)·밀양(나노)과 함께 본격 조성하고 신규후보지 선정도 추진('18.6)

□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계획 수립을 완료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모델로 육성
 - 신규지역(7개)은 산업·SOC 등으로 연계 분야를 다각화*하고,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산지원 제도화 등 추진
 - *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계획(경기),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경북+울산) 등
- (강소도시권)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한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 등을 공유하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 추진
 - * 계획계약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규제완화,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도 추가 검토
- (역사문화권) 고유의 역사유산을 매개로 연계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역사문화권 발전방안을 수립('18.9)하고, 가야권을 선도적으로 추진
- (동서화합지역) 섬진강 양안의 자연·문화자원을 아우르는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 방안(동서통합대교, ex-Hub 고도화 등) 마련

3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착수

- '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성공사례 창출
 -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등 사업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18.1) 하고, 관문심사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
- '18년은 지역의 재생 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대상지 100곳 내외를 선정*('18.8)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
 - *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
 - 광역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2/3수준 자체선정)하고, 주민제안사업을 활성화('18.4) 하는 등 지역 수요를 최우선으로 감안

□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

- (혁신공간 창출) 지역의 활력거점 역할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 조성('18.7~), '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 지정('18.11)
 - * 도시첨단산업단지내 일부 면적을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개발
- (재난지역 치유) 지진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 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등 종합지원 착수('18.7)
 - *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18.4)하여 포함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 (노후시설 정비)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18.3) 및 저리 기금융자* 실시
 - *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이하의 금리로 융자실시 및 보증상품 제공
 -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담팀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18.12, 시범사업 공모)하고 기금상품 개발
- (유희시설 재생) 도서지역 폐교를 활용하기 위한 입지규제 개선, 폐조선소 활용(통영폐조선소 마스터플랜수립, '18.6) 등 추진방안 마련

□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 체계 구축

- (지역참여) 지자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실천형 교육을 시행하고,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전문가 양성*
 -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17, 77개 → '18, 100개 ~)하여, 채용·활용
- 참여형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주민참여 컨설팅단” 운영
 - *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주민으로 구성(10명 내외)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여 풀뿌리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착수('18.6)
 -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後 고용부사업(인건비·보험료 등)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
-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뉴딜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등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
 - 표본확대 등 현황조사를 내실화하고, 종합계획 수립, 분쟁조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現 5년) 등 개선방안 마련*('18.9)
 - * 국토부·법무부 공동 정책협의회에서 논의(「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항)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상생상가 시범사업 착수('18.9~)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반 확립

- (인프라 정비)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로드맵을 마련('18.2)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년 단위 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18.10)
 - 「도시재생특별법」도 환경변화, 뉴딜정책 등을 반영하여 개정*('18.11),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18.7)하여 활성화
 - * 도심 쇠퇴도 기준 정비, 주민 발굴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 지원 등 제도개선
- (금융지원) 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18.3~)하고,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재원 확충방안도 검토('18.6)
 - *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품 개발, 녹색·장기방치건축물 등 검토
- (연구개발) 도시재생실증연구(도시재생R&D, '14.7~'18.10)를 마무리하여 뉴딜사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연구과제 기획('18.9)

4 국토의 품격 향상 및 효율적 활용

◇ '삶의 질'이 중시되는 3만불 시대를 맞아 녹지·친수공간 확대, 건축 디자인 수준 제고, 효율적 공간활용 등 쾌적한 국토공간 조성

□ 쾌적한 생활을 위한 녹지·친수 공간 확대

- (도시공원) **임차공원**(지자체가 사유지를 임차) 등 새로운 형태의 공원을 도입하고, **실효예상** 공원예정지는 **관리대책***을 통해 체계적 관리
 - * 개발압력이 큰 지역을 지자체에서 선별·관리하도록 유도(가이드라인 마련, '18.6)
- (**용산공원**) 부지 반환과 공원 조성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 되도록 목표 지향적 방식에서 **과정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심도있는 현안논의를 위해 추진체계 개편 등 **新거버넌스**를 구축('18.12)하고, 기획전시, 다큐제작 지원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
- (**근교 친수공간**) 생태적 강점을 지닌 **댐 수변공간**을 **학습·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낙동강 하구의 생태·문화공간** 활용 방안* 마련
 - * 국토부·부산시·수자원공사 공동 연구용역 시행('17.11~'18.12)
- (**조경**) **조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18.12)하여 기초조사, 전문가 협력 등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조경진흥단지·시설** 관련 제도개선('18.12)

□ 지역 공공 공간 디자인 품질 제고

- (**전문가 멘토링**)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사업의 품격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지원체계 운영방안*** 마련('18.6)
 - * 총괄건축가 또는 공공건축가 제도, 지역 건축지원센터 등
 - 주민자치센터 등 **소규모 건물을 대상으로 선도사업** 추진('18.10)
- (**건축자산 활용**)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한옥, 근·현대 건축물 등 지자체가 보유한 **건축자산의 보전·활용모델 사업유형** 제시('18.6)
 - * (전남 목포) 근대건축물 활용 근대역사 체험길 조성, (경남 하동) 역사문화 간이역 조성

□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 건축에 특화된 개발·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가칭)을 수립하여 발전 방향 제시

* 건설위주의 법령에서 탈피하여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 단계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건축에 특화된 프로세스 마련('18.12, 「건축서비스법」 개정)

-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토 대상 확대·시기조정, 환류체계 보완 방안을 마련('18.6)

* 전문가(Auri)가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서 예산 적정성, 배치 및 공간 계획, 건축규모 등을 검토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 제거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18.12,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개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적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조정 및 프로젝트 자문 추진

* 공공건축 품격향상 방안 마련('18.8) 및 위원회 역할강화('18.12, 「건축기본법」 개정)

□ 핵심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역세권 개발) 교통·상업 등 상징성이 높은 주요 철도역을 복합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의 공공성도 제고

- 서울역 복합개발계획 마련('18.12),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18.6, 사업공모), 부산역 철도 재배치('18.6, 기본계획수립) 등 추진

- 국가귀속한 민자역사는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일부를 창업공간, 보육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18.12)

- (입체시설 활용) 평면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개발(지상·지하)하여 인근 지역과 효율적인 융·복합 개발

- 주요 기반시설의 상·하부를 입체개발하는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북정역세권 시범사업(LH, '17년 대국민 공모 선정)을 통해 사업모델 정립

* 도로 :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17.12, 제정안 발의)

각종 기반시설 일체 : 「도시개발법」 개정('18.10, 개정안 발의)

□ 난개발 방지 등 국토의 계획적 관리 강화

- (수도권)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절차 신설, 최소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심의기준 마련('18.10)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역할을 강화
 - 계획단계에서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를 도입('18.12)하고 신규공장은 계획된 지역에 집적화를 유도(개별입지 비율 단계적 축소)
-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 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성장관리방안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선
 - *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반시설 배치·규모 등을 제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
 - ** 예) 주거지와 공장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허용 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참여기준 강화*, 입지가능시설 범위제한('18.12) 등 공공성을 강화
 - * 특수목적법인(SPC) 민간투자비율 제한(50%미만), 뉴스테이 민간개발 허용 종료('17)
- (장기미집행시설)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의 영향을 분석하여 난개발 우려 지역을 선별·관리하도록 유도방안 마련('18.6)
 -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18.12)

□ 빈집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 (관리 강화) 도시지역 빈집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 추진
 - * 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 수립
- (공적임대공급) 지자체가 빈집을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
 -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에 맞게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18.6,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